

各國의 保險市場構造의 比較分析

吳 萬 植

<目 次>	
I. 序論	
II. 成長率에 依한 構造比較分析	
1. 保險成長率의 國際比較分析	3) 保險密集度의 國際比較
2. 保險市場構造의 比較分析	2. 保險會社의 種目別比較分析
1) 生・損保市場構造의 比較	
2) 生保市場의 構造比較	IV. 保險種目에 依한 構造比較分析
3) 損保市場의 構造比較	1. 生保의 種目別構造比較分析
III. 保險會社에 依한 構造比較分析	1) 團體・個人別構造比較
1. 保險會社數의 國際比較分析	2) 種目別構造比較
1) 地域別構造比較	2. 損保의 種目別構造比較分析
2) 國家別構造比較	1) 年度別構造比較
	2) 種目別構造比較
	V. 結論

I. 序論

保險의 大衆化 乃至 保險市場의 擴大는 現在 우리나라 保險業界가 解決하여야 할 最大的 當面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터한 保險의 大衆化 또는 保險市場의 擴大란 어 디까지나 被保險者團體(所謂 危險團體)의 構成이 職業的 階層의 및 地域的으로 均衡을 維持하면서 擴大化되어 나가는 것을 意味하며 一國의 保險市場의 어떠한 特殊한 與件에 依한 單純한 保險契約高의 伸張이나 收入保險料의 增加가 保險의 大衆화나 保險市場의 擴大와 반드시 一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韓國保險市場의 現實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本研究의 目的是 우리나라 保險의 大衆化 또 保險市場構造의 近代化에 寄與하기 위해서 于先 世界各國의 保險市場의 構造를 分析 比較 檢討하고 그 結果 各國 保險市場構造의 特色을 明白히 할 뿐만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名國의 保險市場構造와 우리나라의 保險市場構造를 比較함으로써 우리나라가 處해있는 保險市場構造의 現段階를 正確히 把握하고 이를 通하여 우리나라의 保險市場構造를 改善하여 보려는 데 있다.

本研究를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各國의 保險市場構造를 種目別로 分析하는데 重點을 두었으며 이 保險種目別分析에 있어서도 趨勢分析과 現況分析의 두 側面으로부터 接近

하였다. 따라서 第 2 章의 成長率에 依한 構造比較分析에 있어서는 主로 各國의 保險成長率을 相互比較함으로써 各國의 保險市場構造의 成長速度와 發展方向을 模索하는데 그의 重點을 두었으며 第 3 章의 保險會社에 依한 構造比較分析에서는 保險會社에 對한 各國의 政策의 特色을 把握하려고 하였고 끝으로 本論文의 核心的部分이라고 할 수 있는 第 4 章의 保險種目에 依한 構造比較分析에 있어서는 生保와 損保의 두 保險分野에 걸쳐서 各保險種目別로 構造比較分析을 行하였다.

本論文에서 cover 되고 있는 國家數는 保險種目에 따라서 若干씩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16~18 個 國家가 되며 分析期間은 1950~1962 年에 걸치는 約 18個年間을 主로 考察의 對象으로 하였다.

그러나 本論文에서 取扱하고 있는 資料의 大部分이 外國資料임으로 資料蒐集에도 많은 難路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時間을 消費한 바 있었다는 點을 부언하여 둘과 아울러 이와 같은 資料의 蒐集難으로 因하여 細部의 面에까지 파고 들지 못하였다는 것을 指摘하여 두는 바이다.

II. 成長率에 依한 構造比較分析

1. 保險成長率의 國際比較分析

우리가 過去 15 年間의 世界主要險保國家들의 國內 生損保 總收入保險料의 成長과 保險種目別 構造變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興味있는 構造的變化를 發見할 수 있다.

即于先 1964 年 및 1965 年 2 年間의 民間保險會社의 保險料成長率을 中心으로 보아도 거의 殆半의 國家에 있어서 모두 自國의 保險料成長率이 自國의 國民所得成長率을 超過할 수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¹⁾ 또 그뿐만아니라 1951~1966 年까지 15 年間사이에도 全世界는 生損保를 莫論하고 높은 增加率을 보여 주고 있다. 그 中에서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그것이 비록 急激한 「인프레숀」에 基因하고 있다고는 하나 生損保에서 각각 2,313% 및 2,604%의 增加率을 나타냈다⁽²⁾고 한다.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 年度만을 比較해 본다고 해도 美國은 經濟成長率이 年 8.1%인데 反해서 保險料成長率은 年 9.0%이며 西獨도 經濟成長率은 年 8.2%인데 對해서 保險料成長率은 年 13.4%, 日本은 經濟成長率이 年 11.6%인데 對해서 保險料成長率은

(1) 大韓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 57 號, p.64 參考.

(2) 大韓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 64 號, p.61 參考.

<표 II-1>

保險成長率과 經濟成長率

國 名	保 險 料 成 長 率		經 濟 成 長 率	
	1963/64	1964/65	1963/64	1964/65
韓 國	26.4%	57.5%	8.3%	7.4%
日 本	26.5	20.5	14.0	11.6
オ ス 트 리 아	11.1	15.5	9.9	8.9
伊 太 利	16.2	15.1	10.0	7.1
西 獨	11.1	13.4	9.3	8.2
스 웨 벤	8.3	13.0	11.3	9.3
카 나 나	10.7	11.9	7.6	9.6
덴 마 치	9.0	11.7	12.7	11.5
西 瑞	8.0	9.9	10.0	7.6
오 스 트 릴 리 아	9.5	11.2	11.6	9.0
美 國	7.0	9.0	7.4	8.1

주 : 1) 韓國의 保險料成長率은 『韓國保險學會誌』, 第6輯, p.10 參考.

2) 韓國의 經濟成長率은 經濟企劃院刊, 『主要經濟指標』參考.

3) 韓國除外資料는 大韓再保險公社刊, 『保險月報』, 第57號, p.64 參考.

年 20.5%나 된다. 그런데 우리 韓國도 1965 年度에 經濟成長率은 年 7.4%에 不過하였으나 우리나라의 保險料成長率은 無慮 57.5%로 驚異的인 成長을 示顯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0 年代의 保險料成長率을 살펴 보더라도 59年度의 保險料(生損保) 收入總額이 不過 887 百萬원인데 69 年度(推定)에는 21,364 百萬원으로 24 倍가 增加하였고 年平均增加率로 따지면 經常價格으로 39.9%, 純成長率로 換算하여 24.8%나 되며 65 年度以後 5 年間平均으로는 無慮 40.6%의 高度의 成長을 보여주었다.⁽³⁾

그런데 이와 같은 각국에서의 經濟成長率을 超過하는 保險成長率의 伸張은 損害保險部門에 있어서는 特히 自動車責任保險의 平準을 넘는 活潑한 伸張과 生命保險部門에서는 主로 高額으로는 付保된 個人 및 團體保險證券의 實績이 急激히 增加한 데에 主로 起因하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우리나라도 大體的으로 이와같은 點에서는 先進各國들과 同一한 傾向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損害保險部門에서도 自動車保險과 特種保險이 急速하게 發展하고 있고 이 自動車保險과 特種保險은 62 年度까지는 實績이 全혀 없었던 것이 69 年度에는 無慮 自動車保險이 22%, 特種保險이 28%로서 全體保險에서 이 두 保險단이 占하는 比重이 그간 無慮 40%나 될 수 있을 程度로 成長되었다.

生命保險部門에서도 60 年度末의 保有契約은 不過 26 萬件에 約 85 億원에 不過하였으나

(3) 韓國保險學會, 『保險學會誌』, 第6輯, pp.9-10 參考,

<표 II-2>

年平均保險料成長率(1959~1969)

國名	區分	保 險 料				成 長 率	
		US \$		自 國 通 貨		US \$	自 國 通 貨
		1959	1969	1959	1969		
日	本	840	6,400	302,437	2,290,426	22.5(%)	22.5(%)
斯	裴	142	642	8,533	44,970	16.2	18.0
伊	太	421	1,618	261,611	1,012,400	14.5	14.5
알	젠	105	403	8,704	141,006	14.4	32.2
西	獨	1,919	6,758	8,004	24,938	13.5	12.0
오	스 트 리 아	116	392	3,022	10,137	12.9	12.9
佛	蘭	1,279	3,976	6,277	22,100	12.0	13.5
네	텔 란 드	422	1,242	1,592	4,500	11.5	11.0
덴	마 크	177	480	1,221	3,600	10.5	11.4
스	위 스	343	907	1,481	3,916	10.1	10.1
벨	지 움	328	796	16,375	39,557	9.2	9.2
오	스 트 르 런 리 아	653	1,558	586	1,397	9.0	9.0
남	아 고 라 카	266	592	191	425	8.3	8.3
놀	웨 이	143	308	1,027	2,200	8.0	8.0
스	웨 텐	442	936	2,290	4,839	7.8	7.8
美	國	30,028	61,739	30,028	61,739	7.5	7.5
印	度	247	489	1,182	3,700	7.0	12.0
카	나 다	1,717	3,304	1,636	3,546	6.8	8.0
뉴	질 랜 드	142	262	102	233	6.3	8.6
英	國	2,575	4,710	920	1,962	6.2	7.9

자료 :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3/March), 1971, p.6.

<표 II-3>

保 险 料 增 加 率(韓 國)

단위 : 百萬 원

年 度 别	生 保	損 保	計	增 加 率	純 增 加 率
1959	408	479	887	—	—
1960	323	530	913	2.9	△7.1
1961	445	521	966	5.8	△6.5
1962	1,053	665	1,718	77.8	62.2
1963	1,467	864	2,331	35.7	12.6
1964	1,640	1,288	2,948	26.5	△6.1
1965	2,578	2,065	4,643	57.5	43.2
1966	3,510	4,544	8,054	73.5	59.5
1967	5,361	6,115	11,476	42.5	33.9
1968	8,079	8,444	16,523	43.9	33.1
1969	10,240	11,124	21,364	33.3	23.4

자료 : 韓國保險學會, 『保險學會誌』, 第 6 輯, p.10.

주 : 增加率은 經常價格에 의한 增加率임.

<표 II-4>

生保契約高의 增加率

단위 : 千件~百萬 원

年 度 别	件 數	金 額	增 加 率	純 增 加 率
1960	263	8,522	—	—
1961	370	12,219	43.4	26.8
1962	1,046	31,215	155.5	133.1
1963	1,156	34,147	9.4	△9.2
1964	1,254	41,785	22.4	△9.1
1965	2,080	58,068	38.9	26.3
1966	2,482	82,577	42.2	30.7
1967	2,819	119,364	44.5	35.8
1968	3,068	168,259	46.9	30.3
1969	3,275	216,586	28.7	20.5
(12月末)				

자료 : 韓國保險學會, 『保險學會誌』, 第 6 輯, p.11.

69 年 12 月末 現在로는 328 萬件에 2,166 億원으로 增加했고 이는 件數에 있어서는 12 倍
인데 契約高에 있어서는 無慮 26 倍의 增加를 뜻하는 것이며 1 件當 平均契約高로 따져보
아도 32,000 원에서 66,000 원으로 約 2 倍로 增加했음을 意味한다. 또한 增加率에 있어서
도 經常價格으로 44.1%, 不變價格으로 31.7%를 示顯하고 있다.

2. 保險市場構造의 比較分析

1) 生・損保市場構造의 比較

그간의 驚異의인 保險成長率의 變化를 살펴 보아도 또 다음과 같은 興味로운 事實을 發
見할 수 있다.

即 1951~1958 年 사이가 되는 前半期에는 損保事業의 成長率(381%)이 生保의 그것(226
%)을 훨씬 上廻하고 있는데 反해서 1958~1966 年의 後半期에는 生保成長率(729%)이
損保(402%)의 그것을 오히려 上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⁴⁾

大略 이와같은 趨勢는 同 15 年間에 400%를 若干 上廻하는 成長率을 나타낸 멕시코에
서도 發見할 수 있는데 即 이 나라에 있어서도 前半期에는 損保의 成長率(194%)은 生保의
成長率(155%)를 上廻하였으나 後半期에는 生保(127%)가 損保(78%)의 그것을 壓倒
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또 日本에서도 發見되어 日本은 過去 15 年間에 生保의 收入保險料成長率
이 2,820%이었으며 損保의 그것은 816%이었고 生保가 同 前後半期에 각각 419%와 462
%로 거의 비슷한 水準을 維持했는데 反해서 損保의 경우에는 前後半期에 각각 112% 및

(4) 大韓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 64 號, p.61 參考.

<표 II-5>

生・損保 保險料 成長率表

國 別	區 分		1951~1958		58~66/65		51~66/65	
			生保(%)	損保(%)	生保(%)	損保(%)	生保(%)	損保(%)
丹 馬 克			45.3	60.7	89.2	119.0	174.9	252.0
芬 蘭 德			90.4	75.0	320.0	184.4	710.0	397.7
佛 蘭 西			199.5	197.3	179.9	180.0	738.4	732.4
獨 逸			145.7	162.0	192.0	155.7	617.4	569.9
印 度			65.8	24.3	146.0	129.0	307.7	184.5
이 스 라 엘			226.1	381.1	729.3	401.7	2,604.3	2,313.1
伊 太 利			121.0	151.7	137.3	237.5	425.5	749.7
日 本			463.1	112.4	418.7	331.1	2,820.3	815.8
麥 셔 코			124.8	194.3	127.0	77.9	410.5	423.6
돌 웨 이			38.2	60.8	57.0	70.2	175.3	173.7
풀 투 칼			44.8	57.1	75.2	97.9	153.8	211.0
스 웨 텐			94.0	25.2	22.7	110.5	138.0	163.5
스 위 스			51.2	79.7	99.3	127.8	201.3	309.5
美 國			57.3	77.8	60.8	79.7	152.7	219.5
韓 國			472.7	31.1	126.4	197.6	136.0	202.8

자료 : 大韓損害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 64 號, p. 62.

주 : 韓國은 1956 年度부터 始作하였음.

331%를 나타냈다. 그런데 日本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急激한 生保成長率은 過去 15 年間 日本의 生活水準의 向上에 基因한다고 傳하여지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와 같이 芬蘭德에 있어서도 生保가 相對的으로 높은 成長率을 나타냈는데 1951~1958 年間의 前半期의 成長率이 90.4%이었으며 後半期에는 32%의 成長率을 나타냄으로써 全期間中 全體의 成長率은 700%를 若干 上廻한 것이다 그러나 同期間의 芬蘭德의 實績成長도 반드시 富의 增大에 基因한다고 믿을 수 없으며 보다 많은 國家干渉 即 1961 年에 있어서와 같은 被傭者에 對한 義務的年金保險制度設立 등에 큰 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即 雇傭主에게 年金支給義務를 賦課하는 경우에 自體內에서 年金을 形成하거나 或은 民間生命保險會社를 利用하는 두 가지 方法中에서 擇一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그 結果 芬蘭德에 있어서는 生保收入保險料의 急激한 上昇을 招來하게 되었다.

한편 스웨덴에 있어서는 지난 15 年間에 生保成長率이 漸次로 減少하는 傾向을 보였으며 이것도 主로 外部的要因에 基因하는 것이었다. 即 前半期에 있어서의 成長率은 94%이었는데 比해서 後半期에는 23%를 나타냈으며 이 스웨덴에 있어서는 1961 年에 被雇傭

者에 對한 團體保險制度가 確立되있는데 이것은 勞賈 即 傅給속에 保險料를 源泉課稅와 같이 特別項目으로 包含시킬 것을 內容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團體保險은 貯蓄에 目的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純粹한 保險에 意義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事實들은 總收入 保險料의 構成에 重大한 影響을 미쳤고 그 反面 一般의 民營生保社의 收入保險料는 그 實績이 下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反해서 損保에서는 期別成長率이 生保의 그것과 反對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1951~1958 年의 前半期에는 그의 成長率이 25%이었는데 比해서 後半期에는 111%에 達함으로써 全期間동안에 164%의 成長率을 나타냈고 生保에 있어서는 總 138%의 成長率을 示顯했다.

이에 反해서 半期別成長率이 위에서 檢討한 諸國과 相異한 나라들도 많은 것이다. 덴마크, 伊太利, 폴투칼, 스위스 및 美國의 5個國에 있어서는 損保의 成長率이 生保에 比해서 前後半期를 通해서 훨씬 上廻했고 또 한편 各國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類似點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即 위의 5個國은 生損保의 兩者가 共히 前半期에 比해 後半期의 成長이 두드러지게 커진 것이다. 그러나 1966 年까지의 上記統計는 前半期가 7 年間인데 反해 後半期가 8 年間이라는 點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印度의 경우는 全期間中 生保의 成長率이 損保에 比해 높았으며 獨逸과 佛蘭西는 兩保險種目에서 거의 均等한 成長率을 나타냈었는데 最近에 이르러서는 漸次로 生保의 成長率이 顯著하게 增大되기始作했다. 한편 우리가 考察하고 있는 15 年間의 佛蘭西에 있어서의 實績成長率은 損保가 73%이었으며 生保가 74%이었고 獨逸의 경우에는 각각 570% 및 618%이었다.

위에서 檢討한 여러나라들은 다음과 같은 네個의 集團으로 區分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덴마크, 伊太利, 폴투칼, 스위스 및 美國 등의 第1集團으로서 이들 國家들은 그들의 總收入保險料中에서 生保分이 顯著하게 減少하고 이에 反해서 損保가 生保의 그 것에 比해서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는 印度 및 日本 등의 第2集團이며 이들에 있어서는 總收入保險料中 生保分이 繼續 顯著하게 增加하고 있다.

셋째로는 獨逸, 佛蘭西, 놀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의 第3集團이고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는 生保部門의 實績이 比較的 安定되어 있으며 單只 스웨덴만이 國家의 干涉에 依해서 急激한 變化가 있었을 따름이다.

네째로 第4集團은 핀란드이며 이 나라는 1961 年以來로 나타나기 始作한 急激한 上

<표 II-6>

國別元受保險料實績表 (1951~1966/65)

(第 1 集團)

단위 : 百萬(各國貨幣)

덴마크			이태리			풀투칼			스위스			
	生保	%	損保	生保	%	損保	生保	%	損保	生保	%	損保
1951	287	39.9	433	32,392	32.9	66,047	145	17.3	693	467	45.1	380
1952	313	40.1	468	36,397	31.5	79,052	166	18.2	745	485	54.2	410
1953	312	38.3	503	41,318	31.2	91,111	171	10.3	762	525	54.6	437
1954	331	37.7	547	38,300	25.8	110,220	177	17.9	811	561	54.2	475
1955	356	38.3	574	47,000	27.9	121,721	187	17.9	858	616	54.4	516
1956	374	37.8	616	59,285	30.4	135,542	190	16.6	956	630	52.3	574
1957	429	39.6	654	65,225	29.5	156,007	195	15.7	1,032	689	52.3	629
1958	417	37.5	696	71,588	30.1	166,251	210	16.2	1,089	706	50.8	683
1959	497	40.7	724	79,211	30.3	182,400	226	16.4	1,149	765	50.7	742
1960	491	36.2	864	88,663	29.6	211,262	234	15.9	1,242	825	50.0	825
1961	537	36.1	949	99,238	28.7	246,920	262	16.0	1,373	911	49.5	928
1962	602	35.2	1,109	110,764	27.7	288,956	274	15.7	1,468	1,000	48.6	1,056
1963	660	34.8	1,239	125,874	26.3	353,137	307	16.4	1,503	1,072	47.1	1,205
1964	720	34.8	1,350	138,659	24.9	418,097	307	15.4	1,685	1,162	47.2	1,298
1965	789	34.1	1,524	153,950	24.0	486,560	340	15.2	1,891	1,271	47.0	1,432
1966	—	—	—	169,900	23.2	561,180	368	14.6	2,155	1,407	47.5	1,556

(第 1 集團)

(第 2 集團)

美 國			印 度			日 本			
生 保	%	損 保	生 保	%	損 保	生 保	%	損 保	
7,746	46.1	9,069	1951	441	64.9	239	30,800	43.2	40,429
8,322	44.6	10,331	1952	454	67.4	220	39,450	44.4	49,357
8,968	43.7	11,552	1953	482	69.9	208	53,304	48.1	57,512
9,448	44.0	12,023	1954	493	69.7	214	70,799	53.1	62,601
10,191	44.1	12,894	1955	586	71.7	231	91,550	57.3	68,280
10,885	44.0	13,829	1956	596	69.5	261	113,176	58.5	80,406
11,649	43.4	15,222	1957	661	70.4	278	141,124	62.2	85,902
12,177	43.0	16,122	1958	731	71.1	297	173,421	66.9	85,879
12,981	42.3	17,725	1959	845	72.2	332	208,800	69.0	94,017
13,339	41.2	18,999	1960	969	71.7	383	255,100	71.0	104,269
13,931	41.3	19,801	1961	1,123	71.9	439	313,000	69.8	113,384
14,699	41.1	21,100	1962	1,448	75.2	478	390,300	71.7	154,321
16,008	41.8	22,280	1963	1,418	72.9	526	488,500	72.1	189,504
17,040	41.6	23,930	1964	1,623	72.7	608	606,442	70.7	251,253
18,343	41.1	26,324	1965	1,793	72.6	680	741,787	71.8	291,684
19,576	40.3	28,973	1966	—	—	—	899,457	70.8	370,251

(第3集團)

獨逸			佛蘭西			을웨이			스웨덴			
	生保	%	損保	生保	%	損保	生保	%	損保	生保	%	損保
1951	924	35.5	1,676	391	21.5	1,428	223	39.5	342	563	39.4	866
1952	1,061	34.6	2,003	461	20.6	1,778	242	39.2	375	590	35.6	1,067
1953	1,242	34.1	2,401	544	21.5	1,984	307	44.8	378	633	33.9	1,236
1954	1,305	33.8	2,676	647	23.0	2,172	323	44.0	411	833	47.1	937
1955	1,536	33.6	3,030	753	23.6	2,444	342	43.5	443	991	53.2	871
1956	1,737	33.5	3,455	870	22.9	2,925	349	42.1	478	989	51.6	929
1957	2,035	34.3	3,895	1,001	22.7	3,414	371	41.2	529	1,066	51.1	1,021
1958	2,270	34.1	4,391	1,171	21.6	4,246	391	41.5	550	1,092	50.2	1,084
1959	2,591	34.5	4,922	1,339	21.3	4,936	429	41.8	597	1,148	50.1	1,142
1960	3,007	34.6	5,687	1,469	21.0	5,530	451	41.7	630	1,060	46.8	1,203
1961	3,473	35.0	6,438	1,667	21.4	3,130	505	42.7	678	764	37.0	1,299
1962	4,026	35.9	7,173	1,937	22.5	6,665	522	41.7	730	885	38.5	1,415
1963	4,533	36.3	7,967	2,221	22.6	7,617	610	44.3	774	1,136	41.0	1,637
1964	5,172	36.8	8,883	2,580	22.0	9,125	690	44.5	861	1,176	39.1	1,828
1965	5,941	37.1	10,088	2,931	21.6	10,622	614	39.6	936	1,287	37.9	2,108
1966	6,629	37.1	11,227	3,278	21.6	11,887	—	—	—	1,340	37.0	2,282

(第3集團)

(第4集團)

아스라엔			미시코			핀란드			
生保	%	損保	生保	%	損保	年 度	生保	%	損保
2.3	21.5	8.4	153	40.1	229	1951	42	32.3	88
3.0	18.8	13.0	173	39.9	261	1952	48	32.0	102
3.8	18.8	16.4	185	39.4	285	1953	49	32.2	103
4.9	21.2	18.2	209	36.9	358	1954	51	31.9	109
5.4	16.4	22.4	239	34.3	458	1955	57	32.2	121
5.8	17.6	27.1	274	34.4	522	1956	62	30.7	140
6.7	16.8	33.1	308	34.7	579	1957	64	30.6	145
7.5	15.7	40.4	344	33.8	674	1958	80	34.2	154
9.1	16.1	47.4	368	34.1	710	1959	79	30.5	180
11.2	16.4	57.9	401	33.3	805	1960	102	31.7	220
15.4	18.5	67.7	439	34.6	830	1961	106	29.4	253
22.0	19.9	88.6	471	35.0	875	1962	184	39.3	284
30.3	21.7	109.2	515	36.0	917	1963	245	43.4	319
40.4	22.5	138.8	636	37.8	1,045	1964	311	46.2	362
50.2	22.6	172.4	781	39.4	1,199	1965	336	43.5	438
62.2	23.5	202.7	—	—	—	1966	—	—	—

자료 : 大韓損害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64號。

異勢는 國家의 干涉에 依한 것이기 때문에 例外에 屬한다.

또 한편 最近의 動向으로서는 自動車保險部門에서 爆發的인 成長을 가져오고 있다는 事實이며 이는 損害保險成長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損保成長이 自動車台數의 增加와 더불어 絶對的 影響을 받게 되리라는豫測을 暗示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保險料成長率(生損保合計)은 1959~1969年(10年間) 사이에 無慮 2,308%의 成長率을 보였으며 保險料는 59年度의 887百萬원에서 69年度에는 21,364百萬원으로 無慮 24倍가 增加하였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를 年平均增加率로 따지면 經常價格으로 39.9%，純成長率로 換算하면 24.8%가 되고 65年度以後의 5年間平均으로 보면 40.6%나 되고 있다.⁽⁵⁾

이를 生命保險과 損害保險의 部門別 成長率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生保가 損保에 比해서 急速한 速度로 成長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前半期(1956~1958年)에 있어서는 生保가 472.7%의 成長率을 보였는데 反해 損保는 겨우 31.1%의 成長率밖에는 보이지 못하였으며 後半期(1959~1969)에 들어와서도 生保는 1,293.3%의

<표 II-7.>

우리나라의 保險料實績表(1956~1966)

年 度	生 保	%	損 保
1956	4.4	0.01	353.5
1957	33.7	0.08	407.3
1958	252.0	35.2	463.7
1959	408.5	44.8	478.7
1960	383.4	41.9	530.1
1961	444.5	46.1	521.0
1962	1,152.9	61.2	665.0
1963	1,467.0	62.9	863.8
1964	1,640.1	55.6	1,287.5
1965	2,577.9	55.5	2,064.7
1966	3,510.5	43.5	4,543.6
1967	5,360.6	46.7	6,114.7
1968	8,079.3	48.8	8,443.5
1969	11,232.0	47.9	11,442.4

자료 : 1963, 및 1969年度『保險年鑑』에 依하여 計算.

주 : 1) 單位는 百萬원임.

2) %는 生保가 占하는 比率임.

(5) 韓國保險學會, 『保險學會誌』, 第6輯, p.9 參考.

成長率을 보였는데 損保는 879.6%의 成長率을 보였다.

이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으로서는 1956 年度에 全保險料收入에서 生保가 占하는 比重이 0.01%에 不過하던 것이 1958 年度에는 35.2%, 1963 年度에는 62.9%, 1966 年度에는 43.5 %, 그리고 1969 年度에는 47.9%로 增加되었다. <표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生保가 全保險料收入에서 占하는 比重이 1964 年度부터 若干 低下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損保에 뒤떨어지지 않는 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考察한 바 있는 네가지 類型 가운데 本人은 韓國은 第 3 集團에 包含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全保險料收入 가운데 生保分이 占하는 比重이 過去 即 1963 年까지는 急速하게 增加하여 왔지만 64 年以後에 들어와서는 生保分이 安定勢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 生保市場의 構造比較

各國의 國民所得에 對한 生命保險料收入의 占하는 比重은 1958~1963 年까지 사이의 5 個年間의 傾向에서 살펴보면 멕시코만이 不變이고 스위스만이 減少하고 있을 뿐 其他國은

<표 II-8>

國民所得에 對한 生命保險料의 比重

國	名	1958	1963
英	國	3.36%	4.06%
美	國	3.31	3.35
카	나	3.21	3.34
오	스 트 랄 리 아	2.35	2.31
스	위 스	2.59	2.53
西	獨	1.26	1.57
日	本	2.07	2.77
오	스 트 리 아	0.36	0.52
佛	蘭	0.62	0.74
풀	투 칼	0.40	—
스	페 인	0.20	0.24
알	첸 턴	0.22	—
伊	太 利	0.53	0.56
페	루	0.36	—
브	라 질	0.32	—
멕	시 코	0.30	0.30
韓	國	0.12	0.30

자료 : 韓國除外資料는 日本保險界社發行, 『保險界』, 第19卷, p. 54.

- 주 : 1) 西獨分은 同國의 聯合保險協會加盟會社의 成績.
- 2) 英國分은 英國保險協會加盟會社의 成績.
- 3) 풀투칼, 알첸턴, 페루 및 브라질은 1963 年資料不足때문에 比率은 求할 수 없음.
- 4) 韓國의 保險料資料는 『保險年鑑』, 國民所得資料는 經濟企劃院資料에 依함.

모두 增加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 스위스는 1959 年과 60 年에 각각 2.64%까지 上昇하였으나 그 後는 每年 減少하는 狀態에 있다. 이에 反해서 同國의 國民所得에 對한 損害保險料의 比重은 1958 年의 2.51%에서 每年 減少해서 1963 年에는 2.84%에 達하고 있다.⁽⁶⁾

〈표 II-8〉 中 自國의 國民所得中 生命保險料가 占하는 比重이 가장 큰 國家는 英國의 4.06% (63 年)와 美國의 3.35% (63 年)이다.

그러나 韓國은 1958 年度에도 0.12%로 가장 低位이고 1963 年度에 와서도 0.30%로서 멕시코와 같이 가장 낮다.

〈표 II-9〉 國民所得에 對한 生命保險料와 損害保險料의 比率(1963年)

國名	生保	損保
英 國	4.06%	4.51%
美 國	3.35	4.66
카나다	3.34	3.30
오스트랄리아	2.31	3.22
스위스	2.53	2.84
西 獨	1.57	2.76
日 本	2.77	1.01
오스트리아	0.52	2.89
佛 蘭 西	0.74	2.56
풀 투 칼	—	—
스페인	0.24	2.24
알제리	—	—
伊 太 利	0.56	1.51
페루	—	—
브라질	—	—
멕시코	0.30	0.53
韓 國	0.30	0.18

자료 : 1) 日本保險界社發行, 『保險界』, p.54.

2) 韓國資料는 『保險年鑑』과 經濟企劃院資料에 依해서 計算하였음.

다음에 各國의 國民所得에 對한 生命保險料와 損害保險料의 各國의 比率을 比較하여 보면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損害保險料의 比率이 큰 것을 發見할 수 있다. 單只 카나다에 있어서는 生命保險의 比率이 크고 日本에 있어서는 生命保險料의 比率이 顯著하게 크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라틴系의 國家 및 南아메리카諸國과 같이 「인프레」의 傾向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生命保險料의 比率이 훨씬 적다.⁽⁷⁾ 韓國은 1963 年度에 있어서殆

(6) 日本保險界社, 『保險界』, 第19卷, p.54 參考.

(7) 前揭書, p.54 參考.

半의 國家와는 달리 生保가 損保에 比해서 그의 比重이 큰 것을 發見할 수 있고 國民所得에 對한 損害保險料가 占하는 比率이 特히 우리나라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앞으로 保險市場을 開拓할 수 있는 潛在力이 많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各國의 國民所得에 對한 生損保險料의 比率을 1958 年度와 1963 年度에서 이를 國際間에 比較하여 보면 첫째는 멕시코를 除外하고는 各國이 모두 1958 年度에 比해서 1963 年度가 그의 比率이 漸次로 높아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둘째로는 이들 諸國中 8% 以上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英國의 8.57%와 美國의 8.01%뿐이고 멕시코는 0.83%로 가장 低位에 있는 나라이다. 우리 韓國은 그보다도 一層 낮아 58 年度에 0.34%, 63 年度에 0.47%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는 國民所得과 保險料와의 關聯度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即所得成長率은 保險料伸長率의 發展要因이 됨과 同時に 制約要因도 된다는 事實이다. 下記表에 있어서도 高所得國이면 高所得國대로 低所得國이면 低所得國대로 거의例外없이 保險料는 所得成長率에 追從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⁸⁾

<표 II-10> 國民所得에 對한 生損保險料의 比率 (1963 年)

國名	1958	1963
英 國	7.81%	8.57%
美 國	7.70	8.01
加 나 다	6.54	6.64
オ ス 트 라 린	5.37	5.54
스 웨 스	5.10	5.37
西 獨	3.70	4.33
日 本	3.10	3.78
オ ス 트 리 아	2.61	3.41
佛 蘭	2.87	3.30
폴 투 칼	2.52	—
스 페 인	1.76	2.48
알 젠 텐	1.88	—
伊 太 利	1.77	2.07
페 르	1.45	—
브 래 전	1.32	—
멕 시 코	0.89	0.83
韓 國	0.34	0.47

자료 : 日本保險界社, 『保險界』, 第 9 卷, p. 56.

(8) 日本損害保險事業研究所, 『損害保險研究』, 第 27 卷, 第 1 號, pp. 224-225 參考.

3) 損保市場의 構造比較

〈표 II-11〉에서 보는 바와도 같이 國民所得成長率과 損害保險成長率과의 사이에도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所得成長率의 高低는 當然히 保險料伸長率에 反映되고 있으며 特히 우리가 國民所得成長率과 損害保險料伸長率과가 一致하는 線을 假令 均等成長線이라고 呼稱한다면 損害保險料를 縱軸으로 한 均等成長線에 있는 나라는 알겠 din 뿐이며 損害保險料의 伸長率은 恒常 國民所得成長率을 上廻하고 있다.⁽⁹⁾

그러나 單純한 成長率과 伸長率의 高低의 比較만으로서는 그리 큰 意義는 없고 그의 成長率과 伸長率의 高低가 如何한 原因에 依하여 招來되었는가를 分析하는 것이 重要하다. 따라서 國民所得成長率과 損害保險伸長率의 國際比較에 關해서는 成長率 및 伸長率을 몇 個의 要因으로 나누어서 考察할 必要가 있으나 單純한 算術的 要因分析에 依하여 이를 試圖하려고 한다.

于先 國民所得의 增加要因은 「人口增加」와 「生產性向上 및 其他」로 나누어서 생각하여 보기로 하고 實質所得成長率을 y , 人口增加率을 l 이라고 하고 人口增加의 所得寄與率을 1 이라고 하면 y 에서 l 을 控除한 殘差가 「生產性向上 및 其他」에 依한 部分이라고 推定된다. 그리고 각各要因의 所得成長에 對한 貢獻度는 所得成長率中에서 占하는 人口增加의 寄與率과 「生產性向上 및 其他」의 寄與率의 比率로서 表示할 수 있다. 그리고 「生產性向上 및 其他」의 要因의 貢獻度를 說明하는 것은 產業別國民所得의 構成比率이며 이 경우 各國의 經濟發展段階에 依한 差異를 明白히하기 위해서는 1人當國民所得의 水準에 따라서 「그라프」別 區分을 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II-11〉의 27個國은 1960 年의 1人當國民所得(圓換算)으로부터 40萬圓以上의 6個國(美國, 카나다,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의 A 그룹과 25萬圓以上의 B 그룹의 9個國(英國, 덴마크, 西獨, 佛蘭西, 놀웨이, 이스라엘, 베네주엘라, 핀란드, 和蘭), 그리고 9萬圓以上의 C 그룹의 7個國(伊太利, 南아프리카, 알젠틴, 日本, 스페인, 멕시코, 풀투칼)과 9萬圓未滿의 D 그룹의 5個國(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印度, 파키스탄)으로 區分된다.

〈표 II-11〉中의 y/l 의 欄은 實質所得成長率이 人口增加率을 上廻하고 있는 比率을 後者를 1로하는 比率로서 表示한 것이며 이 比率이 높을수록 「生產性向上 및 其他」의 要因이 強하고 그의 貢獻度는 「增加要因」의 欄의 「퍼센트」로 表示되어 있다.

〈표 II-11〉의 要因分析의 結果는 반드시 同一한 것은 아니나一般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後進低開發國에서는 人口增加의 貢獻度가 높고 第1次產業의 構成比率이 낮거나 또는

(9) 前揭書, p.230 參考.

이期間(1951~60年)에顕著하게低下되고 있는國家들에 있어서는「生產性向上 및 其他」의寄與度가높다는것이다.⁽¹⁰⁾

<표 II-11> 國民所得成長率의 國際比較와 要因分析(1951~1960)

그룹	國名	1人當所得 (單位: 實質所得 千圓) (y)	年成長率 (人口 (l))	$\frac{y}{l}$	增加要因		產業別國民所得構成比率						
					人口	其他	第1次		第2次		第3次		
							1951	1960	1951	1960	1951	1960	
A	美國	821	4.9	1.8	2.7 : 1.0	37	63	7	4	39	35	54	61
	加拿大	559	6.2	2.7	2.3 : 1.0	43	57	16	7	40	36	44	57
	斯웨덴	529	5.1	0.6	8.5 : 1.0	12	88	—	—	—	—	—	—
	西班牙	486	6.6	1.4	4.7 : 1.0	21	79	—	—	—	—	—	—
B	紐西蘭	465	4.4	2.2	2.0 : 1.0	50	50	—	—	—	—	—	—
	奧地利	448	2.1	2.2	0.95 : 1.0	105	—5	—	—	—	—	—	—
	平均	551	5.0	1.8	2.8 : 1.0	36	64	—	—	—	—	—	—
	英國	392	2.9	0.4	7.3 : 1.0	14	86	5	4	45	46	50	50
C	芬蘭	377	6.5	0.7	9.3 : 1.0	11	89	20	15	35	37	45	48
	西獨	355	10.0	1.1	9.1 : 1.0	11	89	11	6	50	52	39	42
	佛蘭西	349	6.8	0.8	8.5 : 1.0	12	88	(1952)16	10	39	44	45	46
	荷蘭	346	3.5	0.9	3.9 : 1.0	26	74	15	11	38	35	47	54
D	以色列	330	5.6	3.8	1.5 : 1.0	67	33	(1952)12	12	27	31	61	58
	南韓	312	7.9	3.2	2.5 : 1.0	40	60	(1955)7	7	49	48	44	45
	芬蘭	293	5.1	1.0	5.1 : 1.0	20	80	28	21	41	42	31	37
	和蘭	289	8.7	1.2	7.3 : 1.0	14	86	12	10	51	42	37	48
平均		338	6.3	0.9	7.0 : 1.0	14	86	—	—	—	—	—	—
E	意大利	184	8.7	0.6	14.5 : 1.0	7	93	26	17	40	41	34	42
	南韓	136	5.2	2.5	2.1 : 1.0	48	52	14	11	38	38	48	51
	日韓	136	0.2	1.4	0.14 : 1.0	700	—600	(1954)19	22	27	27	54	51
	日本	128	10.9	1.1	9.9 : 1.0	10	90	25	15	32	38	43	47
F	斯威士蘭	99	2.9	0.8	3.6 : 1.0	28	72	(1955)24	26	31	30	45	44
	斐濟	99	5.9	3.2	1.8 : 1.0	56	44	—	—	—	—	—	—
	普羅	90	4.6	0.4	11.5 : 1.0	9	91	35	23	33	36	32	41
	平均	125	7.0	1.3	5.4 : 1.0	19	81	—	—	—	—	—	—
G	哥倫比亞	82	3.7	2.5	1.5 : 1.0	67	33	40	34	17	25	43	41
	布拉질	51	4.4	3.2	1.4 : 1.0	71	29	28	28	23	26	49	46
	印度	51	2.8	2.7	1.04 : 1.0	96	4	(1955)29	25	29	29	42	46
	巴基斯坦	25	3.4	2.2	1.5 : 1.0	67	33	(1953)51	48	17	19	32	33
平均		46	3.1	2.3	1.3 : 1.0	74	26	—	—	—	—	—	—

자료 : 日本損害保険事業研究所, 『損害保険研究』, 第27卷 第1號, p. 232.

(10) 前掲書, p. 234 參考.

損害保険料의 伸長率의 要因分析에 對해서도 國民所得의 成長率의 要因分析과 同一한 方法으로 行할 수 있을 것이다. 損害保険料의 增加要因을 「所得增加」와 「其他」로 나누고 所得增加의 損害保険料伸長率에 對한 寄與率을 1로하면 損害保険料伸長率 p에서 所得成長率 y를 控除한 殘差가 「其他」에 依한 部分이고 이를 說明하는 것으로서는 種目別保險料構成比率이 있다.

〈표 II-12〉도 國民所得成長率의 要因分析과 同一한 方法에 依하여 分析을 試圖한 것이나 國民所得의 경우만큼 增加要因에 「그라프」別의 構造的差異가 有음을 곧 알 수 있다. 이 것은 國民所得에 對한 人口의 경우에 比해서 損害保険料에 對한 國民所得의 關聯度가 매우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上述한 바와도 같이 所得成長率이 保險料伸長率의 發展要因도 되고 또 同時に 制約要因도 됨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 以外에 保險料伸長率과 所得成長率과의 差를 說明해 주는 「其他」의 要因으로서 種目別保險料構成面의 自動車保險의 比重의 增大를 看過할 수 있다. 近年 世界各國에 거의 共通된 傾向으로서 自動車保險의 急速한 發展이 보여지고 그 結果 火災나 海上保險의 構成比率이 低下해서 自動車保險의 構成比率이 顯著하게 上昇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이 市場構造의 變動이 야말로 所得成長率을 上廻하는 損害保険料伸長率을 招來케 한 主要한 要因中의 하나이다.

다음에 國民所得에 對한 損害保険料의 比率을 〈표 II-13〉에서 보면 1960 年度의 最高는 오스트랄리아로서 3.4%이며 最低는 印度의 0.27%이고 이것에 對해서 日本은 1%에 未達하여 21位이며 한편 韓國은 0.12% (63 年)로서 极히 低位에 있다고 보겠다.

다음에 1951~1960 年의 期間동안의 이 比率의 增減을 보면 最高는 오스트랄리아의 1.08%增, 最低는 알제리의 0.02%減이나 日本은 不過 0.1%增에 不過하며 各國과의 比

〈표 II-12〉 損害保険料伸長率의 國際比較와 要因分析(1951~1960)

그룹	國名	1人當 損害保 険料 (單位: 實質保 險料(p) 圓)	年成長率(%)	p y	增加要因 所得 其他	種目別保險料構成比率								
						火 1951	災 1960	海上 1951	自動車 1960	其 他 1951	其 他 1960			
A	美國	29,830	8.0	4.9	1.6 : 1.0	63	37	(1956) 26	25	2	42	42	30	31
	卡那達	19,090	10.2	6.2	1.6 : 1.0	63	37	36	26	2	1	*62	73	—
B	斯威士蘭	10,706	6.3	5.1	1.2 : 1.0	83	17	33	37	23	15	21	33	23
	西班牙	12,743	9.7	6.6	1.5 : 1.0	67	33	16	12	10	5	4	6	70
C	紐西蘭	11,053	7.6	4.4	1.7 : 1.0	59	41	41	30	—	—	29	38	30
	奧地利	15,539	6.5	2.1	3.1 : 1.0	32	68	30	9	4	30	38	38	31
平均		16,494	7.7	5.0	1.5 : 1.0	67	33							

	英	國	7,752	3.6	2.91	1.2 : 1.0	83	17	41	32	13	9	24	33	22	26		
B	丹	馬	9,124	9.3	6.51	1.4 : 1.0	71	29	20	14	22	13	17	35	41	38		
그	西	獨	7,272	14.5	10.0	1.5 : 1.0	67	33	25	15	11	9	37	46	27	30		
그	佛	蘭	8,922	12.9	6.81	1.9 : 1.0	53	47	27	16	14	6	31	51	28	27		
그	불	웨	이	8,824	5.0	3.51	1.4 : 1.0	71	29	24	20	57	47	10	23	9	10	
그	이	스	라	5,429	6.7	5.61	1.2 : 1.0	83	17	(1955) 42	38	12	10	30	32	16	20	
그	베	네	주	2,422	14.6	7.91	1.8 : 1.0	56	44	36	28	14	18	26	27	24	26	
그	핀	랜	드	5,486	8.2	5.11	1.6 : 1.0	63	37	39	25	24	15	9	27	28	33	
그	和	蘭	6,426	12.2	8.71	1.4 : 1.0	71	29	—	—	—	—	—	—	—	—	—	
	平 均		6,851	7.8	6.31	1.2 : 1.0	83	17										
C	伊	太	利	2,482	14.7	8.71	1.7 : 1.0	59	41	22	14	26	13	21	44	31	29	
그	남	아프리카	2,642	8.6	5.21	1.7 : 1.0	59	41	(1952) 28	22	6	3	*66	75	—	—		
그	알	센	린	2,337	0.04	0.20	0.2 : 1.0	500	400	38	28	14	15	16	27	32	30	
그	日	本	1,159	12.2	10.91	1.1 : 1.0	91	9	69	50	26	28	4	20	1	2		
그	스	페	인	1,689	10.0	2.93	4.4 : 1.0	29	71	(1955) 17	13	15	12	13	19	55	56	
그	페	시	코	647	9.6	5.91	1.6 : 1.0	63	37	45	37	19	18	23	33	13	12	
그	풀	투	찰	1,743	5.5	4.61	1.2 : 1.0	83	17	28	23	25	17	16	25	31	35	
	平 均		1,814	9.4	7.01	1.3 : 1.0	77	23										
D	콜	롬	비	아	754	9.6	3.72	6 : 1.0	38	62	37	38	38	26	11	17	14	19
그	브	라	질	373	4.6	4.41	0.05 : 1.0	95	5	49	47	24	15	10	15	17	23	
그	웨	루	406	5.5	2.82	0.0 : 1.0	50	50	42	32	16	19	36	33	6	16		
그	印	度	67	4.8	3.41	1.4 : 1.0	71	29	50	38	25	22	*25	40	—	—		
그	파	카	스	란	59	2.4	0.21	2.0 : 1.0	8	92	49	43	38	36	*13	21	—	—
	平 均		332	5.3	3.11	1.7 : 1.0	59	41										

자료 : 日本損害保険事業研究所, 『損害保険研究』, 第27卷, 第1號, p. 236.

주 : 自動車保険의 構成比率中 *印은 其他를 包含.

較에 있어서 매우 低位이다. ⁽¹¹⁾

全般的으로 보아서 國民所得에 대한 損害保険料의 比率은 增大傾向에 있는 것은明白하나 國民所得에 對한 損害保険料의 比率은 元來가 相對的인 것이며 그것은 첫째로 經濟成長率의 高低에 依해서 變動하는 面도 있을 뿐 아니라 料率水準의 高低나 保險種目構成比率의 差異를 反映하는 面도 있음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 II-13> 國民所得과 損害保険料의 比率의 國際比較(1951~1960)

國 名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51~1960 比較增減
日 本	0.81	0.89	0.92	0.93	0.92	0.95	0.95	0.05	0.89	0.91	0.10
美 國	2.68	2.84	3.01	3.14	3.06	3.04	3.17	3.34	3.38	3.45	0.77
英 國	1.88	1.96	1.90	1.83	1.81	1.85	1.93	1.96	1.99	1.98	0.10

(11) 前掲書, p. 237 參考.

카나다	2.44	2.49	2.76	2.93	2.86	2.81	3.06	3.34	3.37	3.41	0.97
西獨	1.43	1.52	1.61	1.67	1.67	1.75	1.80	1.93	2.00	2.05	0.62
佛蘭西	1.55	1.66	1.75	1.81	1.88	2.02	2.12	2.32	2.53	2.56	1.01
伊太利	0.83	0.94	0.97	1.03	1.08	1.17	1.25	1.24	1.27	1.35	0.52
西瑞	2.03	2.07	2.11	2.20	2.20	2.26	2.33	2.45	2.53	2.62	0.59
和蘭	1.68	1.76	1.79	1.72	1.77	1.84	1.92	2.06	2.16	2.22	0.54
덴마크	1.93	1.95	2.06	2.14	2.21	2.22	2.24	2.30	2.27	2.42	0.49
놀웨이	2.25	2.28	2.27	2.29	2.33	2.26	2.34	2.52	2.61	2.55	0.30
스웨덴	1.83	1.99	2.07	2.06	1.97	1.95	1.95	2.03	2.05	2.02	0.19
핀란드	1.45	1.70	1.67	1.61	1.60	1.59	1.62	1.63	1.79	1.87	0.42
스페인	0.94	1.07	1.03	1.09	1.09	1.17*	1.27	1.37	1.59	1.71	0.77
풀투칼	1.81	1.90	1.87	1.94	1.97	2.00	2.04	2.13	2.10	1.94	0.13
멕시코	0.48	0.49	0.56	0.60	0.60	0.61	0.62	0.65	0.64	0.65	0.17
브라질	0.72	0.76	0.72	0.70	0.69	0.67	0.66	0.71	0.72	0.73	0.01
알제리	1.74	1.61	1.35	1.38	1.43	1.68	1.68	1.66	1.62	1.72	△0.02
콜롬비아	0.56	0.58	0.60	0.63	0.78	0.92	0.87	0.95	0.90	0.92	0.36
페루	0.63	0.65	0.66	0.67	0.71	0.76	0.82	0.78	0.79	0.80	0.17
베네수엘라	0.45	0.53	0.64	0.69	0.80	0.78	1.17	1.20	0.85	0.77	0.32
오스트랄리아	2.38	2.51	2.58	2.69	2.85	2.95	3.34	3.35	3.31	3.46	1.08
뉴질랜드	1.82	2.03	2.04	2.02	2.10	2.18	2.22	2.35	2.24	2.38	0.56
이스라엘	1.49	1.58	1.52	1.30	1.32	1.33	1.40	1.48	1.53	1.64	0.15
印 度	0.24	0.22	0.20	0.22	0.23	0.23	0.24	0.24	0.26	0.27	0.03
파키스탄	0.26	0.23	0.20	0.21	0.23	0.26	0.27	0.27	0.27	0.31	0.05
南아프리카	—	1.51	1.50	1.57	1.68	1.70	1.80	1.97	1.84	1.94	0.43

자료 : 日本損害保險事業研究所, 『損害保險研究』, 第 27 卷, 第 1 號, p. 238.

III. 保險會社에 依한 構造比較分析

1. 保險會社數의 國際比較分析

그간 世界各國의 保險會社數는 急速한 速度로 增加되어 왔다. 即 19 世紀初期에는 世界의 保險會社總數가 約 30 餘個社에 不過하였으며 그 分布內容도 英國에 14 個社, 美國에 5 個社, 獨逸과 덴마크에 各各 3 個社, 佛蘭西에 2 個社 및 오스트리아, 향가리 및 스위스에 各各 1 個社가 있었음에 不過했다. 그러나 50 年이 지난 1850 年에는 世界의 保險會社總數는 14 個國에 306 個社에 達했고 그後 1900 年에는 26 個國에 1,272 個社로 增加하였다. 但凡 아니라, 1910 年에는 29 個國에 2,540 個의 保險會社가 出現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날에는 71 個 主要 保險國家에 있어서만도 現在 保險市場에서 活動하고 있는 會社數가 約 9,700 餘個社에 達하고 있으며 (海外支店除外)⁽¹²⁾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海外支店 3,002

(12) 大韓損害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65號, p.59 參考.

個社를 합치면 無慮 12,703 個社에 達하게 된다.

1) 地域別構造比較

위의 71 個의 主要保險國家의 9,701 個社中 27.6%에 達하는 2,676 個社가 全般的으로 生命保險業務만을 專擔하고 있으며 이에 反해서 62.5%에 該當하는 6,063 個社가 損害保險業務를 營爲하고 있고 그 外에 損生保를 兼營하고 있는 會社數는 9.9% 即 962 個社에 達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上記 9,701 個社中 유럽地域에서 保險事業을 營爲하고 있는 民營保險會社數가 全體의 48.8% 即 4,733 個社에 達하고 있으며 美洲地域에 42.5%로서 4,125 個社가 있고 아시아洲에 3% 即 291 個社, 아프리카洲에 2.2%로 210 個社 및 大洋洲에 3.5%로서 342 個社가 分布되어 있다.

한편 損生保 및 兼業會社의 地域別 分布狀況을 보면 먼저 生保社에 있어서는 유럽에 28%, 美洲에 68.3%가 있는 反面에 損保社 및 兼業會社에 있어서는 反對로 유럽에 各各 55.5% 및 64.4%이며 美洲에 各各 34.9% 및 18.7%가 營業活動을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위에서 檢討한 9,701 個의 保險會社에 海外支店 3,002 個社를 合한 總 12,703 個社들은 유럽에 47.9%, 美洲에 37.0%, 아시아에 6.0%, 아프리카에 4.9% 및 오스트랄리아 地域에 4.2%가 分布되고 있고 生保社는 美洲地域의 數的으로 유럽地域에 比해 많으며 이에 反해서 損保社 및 兼業會社는 美洲地域의 低調하다. ⁽¹³⁾

2) 國家別構造比較

〈표 III-1〉의 主要 41 個國 中에서 國內自國保險會社와 國內駐在外國社를 包含한 總保險會社數로 볼 때 世界에서 가장 많은 保險會社를 保有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美國으로서 1968 年末 現在 3,351 個社로서 世界第 1 位이고 위의 41 個 主要保險國家의 總保險會社數 11,158 個社中에서 無慮 30.3%를 占하고 있으며 美國의 경우는 自國保有의 總保險會社 3,351 個社中 國內駐在外國社는 51 個社뿐이고 그의 大部分인 3,300 個社가 自國社로 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다.

다음이 스웨덴의 884 個社로서 第 2 位이고 이것은 41 個 主要保險國家 保有 總保險會社數의 7.9%에 該當한다. 第 3 位는 865 個社를 가지고 있는 獨逸이며 이는 全體保險會社中 7.7%를 占하며 以上의 3 個國이 全體保險會社中 約 45.9%를 保有한다는 計算이 된다. 그 다음이 스페인의 775 個社, 덴마크의 734 個社, 네델란드의 678 個社, 佛蘭西의 541 個社의 順序로 되어 있다.

(13) 前揭書, p.60 參考.

그리고 50 個社 以下로 되어 있는 國家는 아이스랜드, 터키, 파나마, 페루, 베네주엘라, 양고라, 모잠비크, 이란, 韓國이며 특히 <표 III-1>의 아시아洲에서 50 個社 以下의 나라는 韓國의 24 個社(國內駐在外國社包含)와 이란의 16 個社뿐이다. 또 그 뿐만 아니라 <표 III-1>의 41 個 主要保險國家中에서 韩國의 24 個社보다 적은 나라는 페루의 20 個社와 이란의 16 個社 두 國家뿐이며 韩國은 全體保險會社數中에서 不過 0.002%의 保險會社數를 保有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다음에 國內社數만을 따져 보는 경우에도 第 1 位는 역시 美國의 3,300 個社이며 第 2 位는 스웨덴의 853 個社 第 3 位는 820 個社를 保有하고 있는 獨逸로서 大體的으로 위와 거의同一한 順序로 나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우리가 下記表에 나와 있는 41 個의 主要保險國家들의 保有會社數를 볼 때 保險社會數를 많이 保有하고 있는 國家들이 유럽洲에 가장 많고 美洲에 若干 있으며 아프리카洲와 아시아洲에 가장 적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3) 保險密集度의 國際比較

保險密集度는 國際的으로 比較하여 보면 上記表의 41 個 主要保險國家中 가장 保險密集度가 높은 國家는 덴마크의 151.65 로서 第 1 位이고 다음이 아이스랜드의 150.00 으로서 第 2 位. 그리고 스웨덴이 112.32 로서 第 3 位이며 네델란드가 53.81 로서 第 4 位이다.

그런데 이 保險密集度는 付保人員萬名當 保險會社數로 計算이 되어 있으므로 付保人員數와 保險會社數間의 相對的關係로서 表示되어 따라서 付保人員數가 적으면 적을수록 保

<표 III-1>

各國의 保險市場構造 및 保險密集度

國名	國內社 (1)	國內駐在外國社 (2)	計 (3)=(1) +(2)	海外支社 (4)	萬名當付保人員 (5)	保險密集度 (6)=(3) :(5)	國內外營業比較 (7)=(4) :(2)
歐羅巴洲							
벨지움	111	78	189	64	9.58	19.73	0.821
덴마크	663	71	734	28	4.84	151.65	0.394
獨逸	820	45	865	90	57.70	14.99	2.000
핀란드	55	3	58	5	4.66	12.45	1.667
佛蘭西	335	206	541	298	49.9	10.84	1.447
그리스	41	65	106	2	8.72	12.16	0.031
英國	354	136	490	1,297	55.10	8.89	9.537
네델란드	376	302	678	71	12.60	53.81	0.235
아이스랜드	21	9	30	0	0.20	150.00	0.000
伊太利	111	47	158	70	52.33	3.02	1.489

國名	國內社 (1)	國內駐在外 國社 (2)	計 (3)=(1) +(2)	海外支社 (4)	萬名當付保 人員 (5)	保險密集度 (6)=(3) :(5)	國內外營業 比較 (7)=(4) :(2)
奧 斯 特 라 아	39	19	58	8	7.32	8.92	0.421
풀 투 칼	40	38	78	3	9.44	8.26	0.079
스 웨 덴	853	31	884	32	7.87	112.32	1.032
스 위 스	61	29	90	211	6.05	14.88	7.276
스 페 인	719	56	775	16	32.14	24.11	0.286
터 키	18	20	38	1	32.71	1.16	0.050
美 洲							
알 젠 텐	188	42	230	2	23.03	9.99	0.049
브 라 질	137	33	170	5	85.60	1.99	0.152
칠 리	161	27	188	0	8.94	21.03	0.000
카 나 다	135	255	390	64	20.40	19.12	0.251
콜 룸 비 아	37	26	63	0	19.2	3.28	0.000
메 시 코	53	0	53	1	45.67	1.16	—
파 나 마 루	11	13	24	0	1.30	18.46	0.000
페 르 루	19	1	20	1	12.38	1.62	1.000
美 國	3,300	51	3,351	424	199.1	16.83	8.314
베 네 주 엘 라	24	11	35	1	9.35	3.74	0.091
아프리카 洲							
앙 고 라	25	5	30	0	5.15	5.82	0.000
모 룩 코	19	52	71	12	14.10	5.04	0.231
모 잠 비 크	18	8	26	0	7.12	3.65	0.000
南 아프리카	98	39	137	15	18.73	7.31	0.385
에 집 트	*	0	*	6	30.91	0.00	—
아 시 아 洲							
印 度	72	66	138	41	511.1	0.27	0.621
홍 콩	23	81	104	35	3.83	27.15	0.432
이 라	*	16	16	0	8.6	1.86	0.000
이 스 라 엔	23	71	94	6	2.67	35.21	0.085
日 本	39	45	84	25	99.92	0.84	0.556
파 키 스 탄	32	32	64	1	107.3	0.60	0.031
타 이	60	50	110	0	32.7	3.36	0.000
오스 트랄 라이	172	92	264	61	11.75	22.47	0.663
필 립 펜	129	45	174	5	34.6	5.03	0.111
韓 國	19	5	24	0	8.8	2.72	0.000

자료 : Swiss Reinsurance Co., *Sigma*, No. 8, August, 1968.

주 : 1) 1968年 1月 1日 現在數值임.

2) 韓國의 保險人口는 生保와 損保數值만을 使用하였음. 生保의 保險人口는 生保保有契約件數의 2分之 1, 損保의 그 것은 保有契約件數를 使用하였음.

3) *表는 國營會社 表示임.

險會社數가 많으면 多을수록 保險密集度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以上의 諸國家들을 볼 때 保險密集度가 主로 큰 國家들이 歐羅巴地域에 主로 密集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다음에 41 個 主要保險國家들 가운데서 特히 主要한 保險國家들만을 抽出하여 그들의 保險密集度를 살펴 보면 獨逸이 14.99, 佛蘭西가 10.84, 英國이 8.89, 美國이 16.83, 日本이 0.8, 比律賓이 5.03, 韓國이 2.72로서 主로 保險密集度가 8~16 사이에 處해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이와같이 본다면 우리나라의 保險密集度는 世界諸國과 比較해 볼때 大體로 低位에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韓國보다 保險密集度가 低位에 있는 나라들을 본다면 日本의 0.8 을 除外한다면 터키의 1.16, 브라질의 1.99, 멕시코의 1.16, 페루의 1.62, 이란의 1.86, 파키스탄의 0.60 으로서 主로 經濟的 後進國家들이 많음을 發見할 수 있다.

다음에는 各國 保險會社의 國內外營業比較를 行한다면 國內駐在外國社보다 自國의 海外支社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英國이 9.537로 第 1位이고 美國이 8.314로서 第 2位, 스위스가 7.276 으로서 第 3位, 그리고 獨逸이 2.000 으로서 第 4位이다. 이以外에도 國內駐在外國社보다 自國의 海外支社를 많이 가지고 있는 國家는 上記의 41 個 保險國家中 핀란드의 1.667, 佛蘭西의 1.447, 이태리의 1.489, 스웨덴의 1.032, 페루의 1.000 등이고 그以外의 國家들은 모두 國內駐在外國社보다 自國의 海外支社를 적게 가지고 있거나 또는 全然 가지고 있지 않다. 韓國은 國內駐在外國社가 5 個社 들어와 있으나 海外支社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比率은 0.000 인 것이고 上記 41個 主要

<표 III-2>

主要保險國家의 再保險會社數

國名	會社數	國名	會社數	國名	會社數
유럽 洲		스페인	9	인도네시아	1
벨지움	1	더 키	2	이스라엘	1
덴마크	3	미주		이스라엘	1
獨逸	39	알젠텐	1	日本	2
핀란드	9	브라질	1	파카스탄	1
佛蘭西	17	칠리	1	大洋洲	
그리스	2	카나다	5	오스트랄리아	3
英國	8	콜롬비아	1	필립핀	3
和蘭	14	멕시코	2	양고록코	1
아이스랜드	1	파나마	1	모로코	1
이탈리	5	페루	1	잠비아	2
오스트리아	1	美國	70	남아프리카	8
풀투칼	6	베네주엘라	2	에집트	1
스웨덴	5	아시아		韓國	1
스위스	7	印 度	2	總計	242

자료 : Swiss Reinsurance Co., *Sigma*, No. 8, August, 1968.

주 : 1968年 1月 1日現在 數值임.

保險國家 가운데서 아시아洲에 屬해 있는 諸國家들 가운데는 國內駐在外國社數보다 自國의 海外支社가 많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2. 保險會社의 種目別比較分析

우리가 各國 保險會社의 種目別比較를 하면 다음과 같은 興味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왜냐하면 政府가 自國의 保險會社數를 統制하고 있는 國家와 그렇지 않은 國家와의 사이에는 保險種目別構造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世界에서 保險會社數를 量的으로 統制하고 있는 國家는 日本과 韓國뿐이며 다른 나라들은 質的統制는 할지라도 量的統制는 實施하고 있지 않다.

먼저 韓國과 日本의 경우를 檢討하여 보면 韓國은 總 24 個의 保險會社中 生命保險이 9 個社 (國內社 6 個社, 外國社 3 個社, 全體中 33.3%), 損害保險이 12 個社 (國內社 12 個社, 外國社 2 個社로 全體中 58.3%) 그리고 再保險이 1 個社 (全體中 8.4%)이며 日本도 역

<표 III-3>

各國保險會社의 種目別構造比較

國別 種目別	韓 國		日 本		印 度		泰 國		인도네시아		比 律 資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生 命 保 險	6(3)	33.3%	20(11)	34.8%	—	%	11(2)	11.2	8(16)	18.0	14(7)	13.4
損 害 保 險	12(2)	58.3	23(35)	65.2	78(70)	0.9952(51)	52(51)	88.8	9(100)	82.0	93(42)	86.6
生·損 兼 業	—	—	—	—	1	0.01	—	—	—	—	—	—
再 保 險	1	8.4	—	—	—	—	—	—	—	—	—	—
生	24	100.0	43	100.0	149	100.0	116	100.0	133	1.00	156	1.00

國別 種目別	紐질랜드		말레이지아		佛蘭西		西獨		白耳義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生 命 保 險	4(14)	11.5	8(16)	18.4	53(15)	11.6	94(8)	10.9	68(38)	19.2	—	—
損 害 保 險	43(95)	88.5	9(100)	81.6	17(199)	88.4	307(40)	37.2	126(319)	80.8	—	—
生·損 兼 業	—	—	—	—	—	—	449	48.1	—	—	—	—
再 保 險	—	—	—	—	—	—	34	3.8	—	—	—	—
計	156	1.00	133	1.00	584	1.00	932	1.00	551	1.00	—	—

國別 種目別	泰 國		荷 蘭		新 蘭		斯 瑞 士		斯 泰 印		伊 太 利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會社數	構成比
生 命 保 險	19(1)	4.1	61(7)	6.2	14(1)	6.7	16(3)	20.6	76(14)	10.2	24(5)	19.7
損 害 保 險	351 (114)	94.5	650 (350)	91.4	155 (55)	93.3	42(26)	74.0	736 (52)	89.8	76(42)	80.3
生·損 兼 業	—	—	—	—	—	—	—	—	—	—	—	—
再 保 險	7	1.4	18(7)	2.4	—	—	5	5.4	—	—	—	—
計	492	1,093	1.00	225	1.00	92	1.00	878	1.00	147	1.00	—

國 別 種 目 別	핀 랜 드		에 집 트		카 나 다		멕 시 코		알 젠 턴	
	會 社 數	構 成 比	會 社 數	構 成 比	會 社 數	構 成 比	會 社 數	構 成 比	會 社 數	構 成 比
生 命 保 險	9	13.4	12(3)	25.8	36(63)	11.4	10	14.2	7	3.3
損 害 保 險	55(5)	86.6	3(34)	63.7	202(562)	88.6	43	61.4	157	74.7
生·損 兼 業	—	—	2(4)	10.5	—	—	17	24.4	43	20.4
再 保 險	—	—	—	—	—	—	—	—	3	1.6
計	69	1.00	58	1.00	863	1.00	70	1.00	210	1.00

- 주 : 1) 韓國은 1969 年度數值임.
 2) 日本은 1964 "
 3) 印度는 1962 "
 4) 佛蘭西는 1960 "
 5) 西獨은 1961 "
 6) 英國은 1961 "
 7) 알젠텐은 1961 "
 8) 白耳義는 1960 "
 9) 덴마크는 "
 10) 에집트는 "
 11) 카나다는 1960 "
 12) 和蘭은 "
 13) 놀웨이는 1960 "
 14) 瑞西는 1961 "
 15) 스페인은 1960 "
 16) 핀랜드는 1961 "
 17) 멕시코는 1960 "
 18) 伊太利는 1961 "
 19) 뉴질랜드는 1961 "
 20) 인도네시아는 1960 "
 21) 比律賓은 1960 "
 22) 泰國은 1959 "
 23) 알젠텐의 再保險欄은 公營保險의 數值임.

시 生命保險이 31 個社로서 全體保險會社數 中에서 34.8% 그리고 損害保險도 58 個社로서 全體保險會社數 中에서 65.2%를 占하고 있다.

韓國과 日本을 比較해 볼 때 이 두 나라는 그 나라의 保險事業의 現況이나 成長過程, 所得水準, 一般大衆의 保險認識度, 保險市場의 規模, 貯蓄機關의 特殊的事情, 其他 將來의 保險事業展望 등에 따라서 保險會社의 絶對數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있으나 各保險種目別 保險會社數의 比重에 있어서는 거의 差異를 發見할 수 있다.

그리고 韓國도 日本과 같이 政府의 保險會社數 統制方針下에 過去 新規會社의 兌許發給을 거의 可及的 不許해 왔으며 既存會社의 支拂能力強化에 重點을 두어 質的統制手段도 講究하여 왔다. 그結果 우리나라에는 生命保險會社 6 個社, 損害保險會社 12 個社와 再保險會社의 1 個社(1971 年度現在)가 保險業을 營爲하고 있다.

먼저 生命保險分野를 살펴 보면 過去에는 9 個社가 運營中에 있었으나 保險需要에 比한 會社數의 過多로 過度한 會社間의 競爭이 惹起되어 財產狀態가 弱化된 劣勢會社의 繢出을 가져왔다. 1962 年에는 生命保險會社의 法定最低資本金을 1 千萬원에서 5 千萬원으로 引上하는 한편 休業中이던 1 個會社의 兌許를 取消한 바 있었다.

그후 監督廳에서 保險會社의 自進合併을 幹旋勸誘하여 1 個劣勢會社(東亞生命)가 自進하여 他會社(高麗生命)로 吸收合併되었고 近來에 와서는 또 한 會社(協同生命)가 支拂能力

을喪失하여回復의可望성이없을뿐아니라多數契約者の利益을阻害할憂慮가濃厚하여자同會社의免許를取消하여9個社가6個社로整備統合되었다.

損害保險分野에서도解放後18個會社가保險業은營爲하고있었으나1951年4個의劣勢會社가큰會社에自進合併된바있고1957年에는監督廳에서1個의劣勢會社를免許取消한바있고1962年保險業法의改正으로損害保險會社의最低資本金을2千5百萬원에서1億원으로增加시키자4個劣勢會社가自律的으로大會社에合併되어現在12個會社로되어있다.

日本도1938年에는生命保險33個社에損害保險47個社였던것이戰爭中에여러會社

<표 III-4>

保險會社의構造比較(韓國)

營業種目	1946	1955	1965	1969			
				國內	外國	計	構成比
損害保險	4	12	11	12	2	14	52.3
生命保險	3	4	6	6	3	9	33.3
再保險	—	1	1	1	—	1	8.4
合計	7	17	17	19	5	24	100.0

자료：大韓再保險公社，『世界의保險市場』，p. 7参考。

가整備되었다가1949年에1個社(第1火災海上)，1950年에1個社(東洋火災海上)，1951年에2個社(朝日火災海上과太陽火災海上)가外國保險會社의進出과 때를같이하여設立되어現在에이르기까지生命保險20個社，損害保險23個社(1964年現在)가營業中에있다.

이에反하여外國保險會社의免許는이를許容하여1949年콘티넨탈社및홍社가營業免許의復活을보아日本國內社와甚한競爭을벌여왔으며이에뒤이어美,英,香港뉴질랜드,比律賓,印度를위시한外國保險會社의支社가免許를取得하여1964年에는損害保險만도35個社,生命保險도11個社에達하게되었다.

다음에自國의保險會社數統制를實施하고있지않는世界各國의경우를살펴보면若干의例外는發見되나大體적으로全體保險會社數에서生命保險會社數가占하는比重이約10%~20%사이가大部分이고덴마크,和蘭,늘웨이,알젠틴과같은나라가10%未滿이고英國,美國,스위스,에집트와같은나라가20%를若干超過하고있다.

한편損害保險會社數가全體保險會社數에서占하는比重을보면大部分의國家가80%

~90% 사이가 많고 生損保兼營을 許容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80% 以下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印度의 경우와 같이 生損保兼營이 1 個社 있을 뿐 78 個社(1962 年 現在)는 모두가 損害保險會社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표 III-5>

保險會社의 構造比較(日本)

營業種目	1938				1950				1960				1964			
	國內	外國	合計	構成比	國內	外國	合計	構成比	國內	外國	合計	構成比	國內	外國	合計	構成比
生命保險	33	3	36	32.4	20	—	20	27.7	2	13	33	35.4	20	11	31	34.8
損害保險	火災	46	26	72	64.9	20	28	48	20	29	49	20	28	48	20	51
海上保險	海上	39	17	56		18	24	42	20	36	56		20	31	51	
特種保險	特種	18	3	21		16	9	25	20	30	50		20	30	50	
船主相互組合	計	47	28	75	67.6	20	31	51	70.9	20	37	57	61.2	20	35	55
合計	—	—	—	0.00	1	—	1	1.4	30	—	3	3.4	3	—	3	3.3
	合計	80	31	111	100.0	41	31	72	100.0	43	50	93	100.0	43	46	89
																100.0

자료 : 大韓再保險會社, 『世界의 保險市場』, p.58 參考.

주 : 1968 年 9 月 現在 日本의 保險會社數는 第 4 次 東部亞細亞保險會議에 提出된 報告書에 依하
면 國內社가 21 個社이며 外國會社가 34 個社에 達하고 있다.

먼저 實質監督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美國의 경우를 考察하여 보면 美國은 保險會社數의
量的統制는 實施하고 있지 않으나 質的統制는 加하고 있고 外國會社의 進出에는 特히 까
다로운 條件을 붙이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美國의 保險會社數는 1962 年末 現在 約 4,800 個會社나 되며 그 內譯을 보면 生命保險이
約 1,500 個社를 넘으며 國內會社가 1,480 個社고 나머지는 카나다 會社들이고 生命保險
會社數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은 約 26.7%이고 株式會社가 89%인 1,322 個
社, 相互會社가 11%인 158 個社이며 크고 오래된 會社는 大概 相互會社이며 全國契約高의
約 60%는 이들 相互會社가 차지하고 있다.

損害保險會社는 1962 年末 現在 約 3,300 個社나 되며 이는 全體保險會社數에서 損害保
險會社가 占하는 比重이 73.3%에 該當함을 뜻한다. 그 內譯은 株式會社가 800 個, 相互會
社가 約 2,400 個나 되며 外國會社가 104 個社이다.

公示主義의 保險監督政策을 採擇하고 있는 英國은 15 世紀 初葉부터 海上保險의 일찌기
發達한 바 있었으나 1950 年末 國내會社가 286 個社, 外國會社 51 個社, 合計 337 個社
였던 것이 1961 年末에는 國내會社 356 個社, 外國會社 234 個社, 合計 590 個社로 增加
되었다.

英國에서는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의 兼營이 許容되어 生命保險專擔會社는 190 個社

(Ordinary life 85, Industrial life 105)로서 全體保險會社數에서 生命保險會社가 占하는 比重은 約 32.2%에 達하며 英國에는 再保險專擔이 163 個社나 되며 이중 15 個社는 生命保險專擔이고 148 個社는 損害保險專擔이다.

<표 III-6>

保險會社의 構造比較(英國)

	1938			1950			1960			1961		
	國內	外國	計	國內	外國	計	國內	外國	計	國內	外國	計
普通生命保險	—	—	—	—	—	—	—	—	—	85	15	100
簡易生命保險	—	—	—	—	—	—	—	—	—	105	—	105
火 災	—	—	—	—	—	—	—	—	—	184	68	252
海 上	—	—	—	—	—	—	—	—	—	151	57	208
自 動 車	—	—	—	—	—	—	—	—	—	171	59	230
傷 害	—	—	—	—	—	—	—	—	—	171	58	229
雇 傭 主 責 任	—	—	—	—	—	—	—	—	—	173	56	229
船 空	—	—	—	—	—	—	—	—	—	61	17	78
其 他	—	—	—	—	—	—	—	—	—	232	61	293
合 計	211	29	240	286	51	337	347	224	571	356	234	590

주 : 1961 年의 簡易生命保險者 105 個社는 簡易生命保險會社 14 外에 簡易生命을 取扱하고 多數의 集金友愛組合이 包含되고 있다.

現在 獨逸에 있어서는 海上保險만을 專業으로 하고 있는 保險會社들은 聯邦政府의 監督을 받지 않게끔 法律로서 規定되어 있으며 이들을 除外한 聯邦政府의 監督을 받고 있는

<표 III-7>

保險會社의 構造比較(西獨)

營業種目	1938			1952			1960			1961		
	國內	外國	計									
生命保險	—	—	—	90	6	96	94	8	102	94	8	102
恩給葬儀基金	77	6	83	321	—	321	352	—	352	351	—	351
健康保險	40	—	40	97	—	97	101	—	101	98	—	98
損害保險	112	41	153	273	16	289	310	40	350	307	40	347
再保險(専門)	28	—	28	31	—	31	34	—	34	34	—	34

자료 : Swiss 再保險會社偏 越知隆譯, 『世界の保險市場』, p. 292 參考.

주 : 1) 1938 年의 會社數는 收入保險料 百萬리아리스마르크 以上의 것 만이다.

2) 1960 年에는 37 의 公營保險事業體와 約 8,750 의 小規模의 保險組合 (家蓄保險組合 約 6,500 을 包含)이 州의 監督에 服從하고 있었다.

保險會社數는 1961 年 現在 932 個社(國內社 884 個社, 外國會社 48 個社)로서 그 內譯은 生命保險이 102 個社로서 10.9%, 損害保險이 347 個社로서 37.2%, 生·損保兼業이 449 個社로서 48.1%, 再保險이 34 個社로서 3.8%를 各各 占하고 있다.

印度는 1950 年末 現在 國內保險會社가 235 個社, 外國保險險會社가 106 個社가 있었으나 그後 1956 年에는 生命保險事業이 國營화됨으로써 事實上 民營의 生命保險會社는 없어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印度의 保險會社數는 1962 年末 現在 國營生命保險會社 1 個社, 損害

<표 III-8>

保險會社의 構造比較(印度)

營業 種目	1938			1950			1960			1961			1962			
	國內	外國	計	構成比	國內	外國	計	構成比	國內	外國	計	構成比	國內	外國	計	構成比
生保業	182	12	194	53.7	135	5	140	14.1	—	—	—	—	—	—	—	—
損保業	17	117	134	39.2	20	86	136	39.8	88	37	161	99.9	82	73	155	99.9
生損兼業	18	14	33	7.1	50	15	65	19.1	1	—	1	0.1	1	—	1	0.1
合計	217	143	361	100.0	235	106	341	100.0	89	73	162	100.0	83	73	156	100.0
種目別	生命	—	—	—	185	20	205	—	1	—	1	—	1	—	1	—
	火災	—	—	—	—	73	79	152	50	50	100	48	49	97	47	49
	海上	—	—	—	—	67	56	123	13	16	29	12	12	24	12	10
	其他	—	—	—	—	92	55	147	25	12	37	22	12	34	19	11
																30

자료 : Swiss 再保險會社編 越知隆譯, 『世界の保險市場』, p. 15 參考.

保險會社 72 個社, 合計 79 個社의 國內會社와 外國保險會社 70 個社가 營業을 하고 있다 따라서 印度의 生命保險會社가 1 個社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國營化되었기 때문이며 印度의 特殊性은 이와같은 데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世界各國의 保險會社의 種目別構造는 크게 두가지 類型으로 우선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하나는 韓國과 日本과 같이 自國保險會社數에 對해서 質的統制뿐만 아니라 量的統制를 加하고 있는 國家이며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는 生命保險會社數(外國社包含)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이 30~40%사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反해서 損害保險會社數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이 58~66%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國家가 自國의 保險會社數에 對해서 量的統制를 實施하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比해서一般的으로 自國의 生命保險會社數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이 크고 또 한편 自國의 損害保險會社數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고 比重은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政府가 自國의 保險會社數에 對해서 質的統制는 加할지라도 量的統制를 實施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의 類型이 있다. 이와같은 나라들은 現在 韓國과 日本을 除外한 其

<표 III-9>

保險會社의 構造比較(佛蘭西)

營業種目	1938				1950				1960				
	國內	外國	計	構成比	國內	外國	計	構成比	國內	外國	計	構成比	
元 受 保 險	生命, 婚姻, 出產, 톤단 카피타리자 치온 火災·災害· 其他	57 32 411 合 計	16 — 135 500	73 32 546 651	11.2 50 83.8 100.0	53 21 345 419	14 — 167 181	67 21 512 600	6.8 2.3 52.6 61.7	53 14 303 370	15 — 199 214	68 14 502 584	6.5 1.4 42.1 56.0
再保險(専門)	—	—	—	—	14	359	373	38.3	15	444	459	44.0	
合 計	500	151	651	100.0	433	540	973	100.0	385	658	1,043	100.0	

자료 : Swiss 再保險會社編 越知隆譯, 『世界の保險市場』, p. 323 參考.

주 : 1)元受保險會社數는 1938年 6月 14日付 法令에 依해서 監督을 받고 있는 會社數이다.

2)再保險專門會社는 前記法令에 依해서 國家의 監督을 받고 있지 않다.

他諸國에 該當하며 이들 諸國들에 있어서 上記表에 依하면 自國의 生命保險會社數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이 大體的으로 約 10~20%사이이고 덴마크, 和蘭, 놀웨이, 알젠틴과 같은 나라는 10%未滿이고 英國, 美國, 스위스, 애집트와 같은 나라는 20%를 若干 超過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韓國은 日本과 거의 同一한 類型을 奪고 있으며 韓國이 日本과 다른 點은 再保險會社가 獨立的으로 設置되어 있다는 點만이고 自國의 生命保險會社數나 損害保險會社數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은 거의 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

IV. 保險種目에 依한 構造比較分析

1. 生保의 種目別構造比較分析

그간 各國의 急速한 經濟成長과 個人所得의 向上 그리고 保險事業의 範圍擴大와 새로운 形態의 保險商品의 導入 등으로 그 나라의 民營保險會社가 自由로이 發展할 수 있었던 國家에 있어서는 그 동안 生命保險은 커다란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1968年사이의 各國의 生命保險事業의 構造變化에 對해서 國際比較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各國의 統計資料가 同一한 制度에 依해서 算出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로는 各國의 保險商品의 類型과 實施方法도 國家에 따라 相異하고 保有契約高, 保險料, 投資收入 등 個個의 資料에도 여러가지 外的 強制力이 作

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相異한 要素들이 存在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各國의 統計資料를 檢討하여 보면 各國의 生命保險事業의 構造的變化趨勢를 大略 把握할 수 있게 된다.

1) 團體・個人別構造比較

그 나라의 全體 生命保險中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의 構造는 國家에 따라서 반드시 同一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世界各國의 그것을 綿密히 檢討하여 보면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이와같은 事實을 考察하기 위해서 16個의 主要保險國家들의 保有契約高와 契約 件數를 中心으로 團體와 個人別로 그의 構造를 살펴보면 <표 IV-1>의 16個 主要保險國家中 團體保險의 構成比가 50%以上을 超過하고 있는 나라는 5個國家(佛蘭西, 스웨덴, 터키, 알젠틴, 멕시코)에 不過하며 殘餘 11個國家는 個人保險의 構成比가 50%以上을 超過하고 있다.

生命保險의 保有契約高를 基準으로 보아서 가장 團體保險의 比重이 높은 나라는 알젠틴으로서 88.7%이며 다음이 스웨덴의 83.9%, 셋째가 佛蘭西의 63.1%, 네째가 터키의 62.0%, 다섯째가 멕시코의 53.0%의 順序로 되어 있다.

다음에 團體保險의 契約件數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에는 역시 알젠틴의 82.8%가 第 1位이고 다음이 페루의 78.9%, 셋째가 멕시코의 71.8%, 네째가 터키의 71.6%의 順으로 된다.

이에 反해서 團體保險의 比重이 낮은 國家는 獨逸로서 각각 9.7%와 14.8%, 그리고 英國이 21.2%와 4.6%, 日本은 保險契約高에 있어서 16.4%, 네델란드는 契約件數에 있어서 12.8%이다.

다음에 個人保險의 比重이 큰 나라를 考察하여 보면 個人保險의 構成比率이 가장 높은 나라는 保險契約高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獨逸이 90.3%로서 가장 높고 第 2位가 日本으로서 83.6%, 第 3位가 英國으로서 78.8%, 第 4位가 伊太利로서 75.9%, 第 5位가 니카라구아의 64.4%, 다음이 페루의 62.8%, 스위스의 58.7%, 美國의 57.5%, 네델란드의 57.4%, 카나다의 55.4%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볼 때 全體 生命保險中 個人保險의 比重이 큰 國家들 中에는 經濟的 先進國家들이 많이 있으며 그의 主要한 理由로서는 特히 個人保險의 廣範圍한 分布에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反面 美國과 카나다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이 對等한 比率을 보이고 있다.

<표 IV-1>

團體保險과個人保險의 構成

國名	團體保險		個人保險	
	契約高(百萬 US\$)	構成比 (%)	契約高(百萬 US\$)	構成比 (%)
벨지움	3,760	45.4	4,522	54.6
獨逸	4,292	9.7	40,148	90.3
英國	17,922	21.2	65,179	78.8
佛蘭西	25,137	63.1	14,714	36.9
伊太利	2,257	24.1	7,131	75.9
네델란드 ¹⁾	10,735	42.6	14,454	57.4
스웨덴	28,881	83.9	5,524	16.1
스위스	4,243	41.3	6,027	58.7
티카	111	62.0	68	38.0
美國 ²⁾	502,397	42.5	680,957	57.5
카나다 ³⁾	38,780	44.6	48,108	55.4
알젠텐	2,028	88.7	259	11.3
멕시코	2,879	53.0	2,551	47.0
니카라구아	36	35.6	65	64.4
페루	119	37.2	201	62.8
日本	21,700	16.4	110,881	83.6

자료 :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8/August), 1970, p.5 參考.

- 주 : 1) 年金保險包含.
 2) 信用生命保險除外.
 3) 地方保險會社除外.

韓國에 있어서는 全體 生命保險中 團體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이 그의 特色이라 할 수 있다. 即 1962 年에 있어서는 團體保險의 比重이 無慮 79.4%이고 個人保險의 比重이 20.6%이었으나 1970 年에는 團體保險의 比重이 70.7%, 個人保險의 比重이 29.3%로 되어 團體保險의 比重이 若干은 減少되었으나 아직까지도 70%以上이라는 큰 比重을 維持하고 있다.

이를 世界의 主要保險國家들의 그것과 對比하여 보면 團體保險의 比重이 韓國보다 큰 나라는 알젠텐의 88.7%와 스웨덴의 83.9%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團體保險의 比重이 不均衡的으로 肥大하게 發展한 主要한 理由는 1962 年에 公布實施하게 된 國民貯蓄組合法에 依하여 公務員, 國營企業體職員들의 貯蓄이 團體保險에 限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民營生保業界의 傾向은 各社가 大體로 同一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또한 所謂 最上位級의 會社가 團體保險에 더욱 큰 比重을 두고 있다는 것도 웃지 못할 事實이라 하겠다.

<표 IV-2>

團體保險과個人保險의構成(韓國)

年 度	團 體 保 險		個 人 保 險	
	契 約 高(億원)	構成比 (%)	契 約 高(億원)	構成比 (%)
1962	96.6	79.4	25.5	20.6
1963	245.8	78.8	66.3	21.2
1964	264.1	77.4	77.3	22.6
1965	304.1	72.6	113.7	27.4
1966	428.2	73.7	152.4	26.3
1967	564.9	68.4	260.8	31.6
1968	885.7	74.2	307.9	25.8
1969	1,149.5	68.3	533.0	31.7
1970	1,650.2	70.7	683.6	29.3

자료 : 大韓再保險公社, 『1970 年度保險年鑑』参考.

2) 種目別構造比較

1960~1968 年間의 各國의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를 各國의 保險契約高를 中心으로 比較해 보면 그의 構成에 있어 明白한 變化가 發生하였음을 發見할 수 있다.

(1) 定期保險(Temporary Life Insurance)

即 <표 IV-3>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各國의 保險契約高는 個人保險이냐 團體保險이냐를 莫論하고 各國 모두 1960 年에 比해서 1968 年에 顯著하게 增加하였을 뿐만 아니라 特히 定期保險(Temporary Life Insurance)은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生命保險保有契約高의 構成比率에서 增加하였음을 發見할 수 있고⁽¹⁴⁾ 그의 主要한 理由로서는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長期的 財政保護에 對한 個人需要의 漸次的增加, 둘째는 銀行과 證券을 通한 貯蓄手段으로서의 競爭力增加, 셋째는 長期團體保險과 結合된 長期貯蓄 및 投資範圍의 擴大, 네째는 貯蓄手段으로서의 損失을 防止하는 適切한 保險商品의 增大, 다섯째는 國家의 年金計劃의 擴張, 여섯째로는 福祉國家의 影響力 增大 및 世界上의 問題들을 들 수 있다.

(2) 養老保險(Endowment Assurance)

上述한 바와 같이 個人保險中의 定期保險은 그의 構成比率에 있어서 下記表에 나타난 國家들에서 多少間의 增加를 보이고 있는 反面 養老保險(Endowment Assurance)과 終身保險(Whole Life Insurance)은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同期間中 下落하고 있다. 特히 스위

(14)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11/November), 1970, p.2.

스, 伊太利, 오스트랄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日本에 있어서는 定期保險(Temporary Life Insurance)이 顯著하게 增加를 보였다. ⁽¹⁵⁾

이에 反해서 養老保險에 있어서는 同期間中 1960 年의 76.6%에서 1968 年의 78.8%로 增加한 佛蘭西를 除外하고는 下記表에 提示된 國家들에 있어서는 그의 構成比가 모두 下落하고 있는데 特히 日本(88.0%에서 56.5%), 이스라엘(18.7%에서 5.1%), 오스트랄리아(48.7%에서 32.9%) 등에 있어서는 下落의 程度가 매우 甚함을 發見할 수 있다.

(3) 終身保險(Whole Life Insurance)

養老保險과 같이 終身保險에 있어서도 그의 構成比率이 同期間中 매우 甚히 下落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는데 特히 오스트랄리아만은 1960 年의 35.8%에서 1968 年의 39.8%로 增加를 보이고 있고 下記表에 나타난 여타나라들中 이스라엘(57.3%에서 45.0%)이 顯著하게 下落하고 있다. 그러나 이 終身保險은 1968 年度에 있어서는 美國은 52.2%, 이스라엘 45.0%, 오스트랄리아 39.8%로서 매우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盛

<표 IV-3>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

國 別	區 分 貨幣單位	保有契約高(單位: 百萬)		養老保險		終身保險		定期保險	
		1960	1968	1960 (%)	1968 (%)	1960 (%)	1968 (%)	1960 (%)	1968 (%)
a) 個人保險									
獨	逸	마르크	56,568	160,593	98.5	98.0	—	—	1.5 2.0
佛	蘭	프랑	24,855	72,806	76.6	78.8	9.0	6.2	14.4 15.0
伊	太	리라	1,592,202 ¹⁾	3,324,466	78.6	73.6	7.5	4.8	13.9 21.6
스	웨	크로나	21,764	28,732	71.8	71.3	—	—	28.2 28.7
스	위	프랑	13,211	25,930	89.8	72.1	0.6	0.3	9.6 27.6
오	스트	실링	8,204	20,993	48.7	32.9	35.8	39.8	15.3 27.3
이	스	파운드	304	3,750	18.7	5.1	57.3	45.0	24.0 49.9
日	本	원	6,002,000	39,662,000	88.0	56.5	—	—	12.0 43.5
美	國	달라	379,900	669,000	21.0	20.9	58.4	52.2	20.5 26.9
b) 團體保險									
獨	逸	마르크	7,169	17,169	60.0	41.1	—	—	40.0 58.9
佛	蘭	프랑	28,434	124,378	—	—	—	—	100.0 100.0
스	웨	크로나	11,914	149,602	5.5	0.1	—	—	94.5 99.9
스	위	프랑	4,091	18,254	59.6	41.3	1.7	0.6	38.7 58.1
月	本	원	986,000	7,762,000	0.0	1.4	—	—	100.6 98.6
美	國	달라	175,400	438,000	1.0	0.9	—	—	99.0 99.1

자료 :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p.3.

주 : 1) 1962 年度數值. 2) 團體保險包含.

(15) *Ibid.*, p.2.

行하고 있는 養老保險(獨逸은 98.0%, 佛蘭西 78.8%, 伊太利 73.6%, 스웨덴 71.3%, 스위스 72.1%)에 있어서는 美國에서는 單只 21%밖에 되지 않는다.

美國은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定期保險이 1960 年以來 눈에 띄일 만큼 增加하여 1960 年에는 그의 構成比가 20.5%에 不過하였으나 1968 年에는 26.9%로 增加하고 있다.

(4) 團體定期保險

다음에 團體保險에 있어서는 上記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獨逸과 스위스의 두 나라를 除外하고서는 거의 大部分의 國家들이 定期保險에 集中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¹⁶⁾

이 定期團體保險은 主로 民營保險會社에서 cover 하고 있는 死亡危險(Death Risk)이며 1961 年에 勤勞者들을 위하여 強制團體保險을 採擇한 스웨덴에서 急速한 成長을 보였다.

이 團體保險의 成長率은 이스라엘, 日本 그리고 멕시코가 매우 높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國家들은 처음에 낮은 水準에서 出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위스나 獨逸도 團體保險에서 定期保險이 차지하는 比重은 각各 無視할 수 없을 程度이며 佛蘭西(1968 年 100%), 日本(1968 年 98.6%), 美國(1968 年 99.1%), 스웨덴(1968 年 99.9%)등은 團體保險이 거의 全的으로 定期保險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5) 團體養老保險

團體養老保險의 경우를 잠깐 살펴 본다면 上記表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1968 年度에 獨逸의 41.1%와 스위스의 41.3%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僅少한 比重에 머물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는데 佛蘭西는 거의 없고 스웨덴의 1968 年度의 0.1%, 日本의 1.4%, 美國의 0.9%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에는 國別種目別 構造分析을 行하여 보기로 한다.

(1) 美　　國

美國은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定期保險의 構成比(1960年的 20.5%에서 1968 年의 26.9%로)가 增加하는 反面 終身保險(1960年的 58.4%에서 1968年的 52.2%로)과 養老保險(1960 年의 21.0%에서 1968 年의 20.9%로)의 比重이 減次로遞減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美國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終身保險의 比重이 50%를 超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對해서 團體保險에 있어서는 團體定期保險의 比重이 壓倒的이며 美國에 있어서는 團體 定期保險이 1960 年에 99.0%이던 것이 1968 年에도 99.1%로 從來의 壓倒的인 比重을 그대로 繼續維持해 나가고 있다.

(16) 大韓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 96 號, p.75.

이에 反해서 美國에서는 團體終身保險은 거의 行하여지지 않고 있고 團體養老保險이 若干 行하여지고 있을 程度인데 團體養老保險은 1960 年의 1.0%에서 1968 年에는 0.9%로 그나마 下落하고 있다.

(2) 獨逸

獨逸은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養老保險 團體保險에서는 團體定期保險이 盛行하고 있다. 먼저 個人保險에 對해서 생각하여 보면 獨逸에 있어서는 終身保險은 거의 行하여 지지 않고 定期保險이 1960 年의 1.5%에서 1968 年에 2.0%로 그의 構成比가 若干 增加하고는 있으나 現在로서는 그의 比重이 보잘 것이 없고 이에 反해서 養老保險은 1960 年의 98.5%에서 1968 年의 98.0%로 그의 構成比가 若干 下落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 養老保險이 個人保險에서 壓倒的 比重을 占하고 있다.

다음에 團體保險의 경우를 살펴보면 獨逸에 있어서도 團體定期保險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는 反面 團體養老保險의 比重이 下落하고 있다. 그러나 獨逸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1968 年度에 團體養老保險의 比重이 41.1%나 되는 높은 比重을 찾이하고 있다는 點이며 獨逸에 있어서는 團體終身保險은 거의 行하여지고 있지 않다. 이에 反해서 團體定期保險은 1960 年의 40.0%에서 1968 年에는 58.9%로 그의 構成比가 大幅의으로 增加되었다.

(3) 佛蘭西

佛蘭西는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養老保險과 定期保險의 構成比가 增加하고 있고 團體保險에 있어서는 團體定期保險이 거의 全部를 占하고 있다.

먼저 個人保險에 對해서 살펴보면 佛蘭西에 있어서는 歐羅巴 여러 나라들과 같이 養老保險이 壓倒的 比重을 占하며 그의 構成比도 1960 年의 76.6%에서 1968 年의 78.8%로 增加하고 있고 佛蘭西의 이와같은 傾向은 其他諸國에서 養老保險이 個人保險에서 占하는 比重이 下落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對照를 이루는 것이다.

다음에 定期保險의 構成比도 다른나라와 같이 增加하고 있으며 그의 構成比重도 1960 年의 14.4%에서 1968 年의 15.0%로 增加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個人保險中 終身保險의 構成比는 9.0%에서 6.2%로 下落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佛蘭西의 團體保險을 보면 團體養老保險과 團體終身保險은 거의 없고 團體定期保險만이 行하여지며 이것이 佛蘭西의 團體保險의 特徵이기도 하다. 따라서 佛蘭西의 團體定期保險의 構成比가 1960 年의 100%에서 1968 年度에도 100%로 되어 있다.

(4) 日本

日本은 個人保險分野에 있어서 定期保險의 比重이 同期間中 顯著하게 增加한 反面 養老保險의 比重이 크게 떨어지고 團體保險分野에 있어서는 團體定期保險의 比重이 若干 下落한데 反하여 團體養老保險의 比重이若干 增加하고 있다.

먼저 個人保險에 對해서 이를 살펴보면 日本의 定期保險은 1960 年의 12.0%에서 1968 年의 43.5%로 8 年間에 그의 構成比가 無慮 3.6 倍가 增加하였는데 反해서 日本의 養老保險은 1960 年의 88.0%에서 1968 年의 56.5%로 同期間에 그의 比重이 31.5%가 下落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日本에서는 終身保險은 거의 行하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現在 日本에서는 養老保險과 定期保險은 大體的으로 約 半半씩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對해서 日本의 團體保險을 보면 團體養老保險이 1960 年의 0.0%에서 1968 年의 1.4%로 若干 增加하고 있기는 하나 그의 比重은 보잘 것이 없고 이에 對해서 團體定期保險은 1960 年의 100.0%에서 1968 年의 98.6%로 若干 下落하는 傾向에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日本의 團體保險은 團體定期保險의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5) 韓 國

韓國의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의 特色은 個人保險에 比해서 團體保險의 構成比가 漸進的으로 下落하고 있는데 反해서 個人保險의 構成比가 漸次로 增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團體保險의 比重이 壓倒的이라는 點과 個人保險內容에 있어서도 養老保險과 生存保險이 急速的으로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여 온 反面 死亡保險은 大體的으로 踏步狀態를 걸어왔다는 事實 등이라 할 수 있겠다.

<표 IV-4> 生命保險의 種目別構成의 變化(韓國) 단위 : 憶원

區 分 年度別	團體保險		生存保險		死亡保險		養老保險		計
	契約高	%	契約高	%	契約高	%	契約高	%	
1962	96.6	79.4	23.8	9.5	0.29	0.2	1.4	1.1	122.1
1963	245.8	78.8	47.7	15.3	0.29	0.1	18.2	5.8	312.1
1964	264.1	77.4	54.6	16.0	0.31	0.1	22.3	6.5	341.4
1965	304.1	72.6	84.8	20.3	0.34	0.1	28.4	6.8	417.8
1966	428.2	73.7	119.4	20.5	0.30	0.2	32.6	5.6	580.6
1967	564.9	68.4	219.2	26.5	0.28	0.2	41.2	4.9	825.7
1968	885.7	74.2	261.9	21.9	0.23	0.1	45.7	3.8	1,193.6
1969	1,149.5	68.3	426.5	25.3	1.85	0.2	104.7	6.2	1,682.5
1970	1,650.2	70.7	518.0	22.1	15.88	0.8	149.6	6.4	2,333.8

자료 : 大韓再保險公社, 『1970 年度 保險年鑑』参考.

먼저 上記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保有契約高도 그동안 急速

한速度로增加되어 왔다. 即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의 保有契約高는 1962年에는 122.1億 원에 不過하였으나 8年後인 1970年에는 約 19.1倍인 2,333.8億원에 達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의 우리나라의 이와같은 急進의 發展은 1962年 2月에 公布實施된 國民貯蓄組合法에 依해서 團體保險加入이 激增한데에 基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다음에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과는 달리 生命保險中에서 團體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으며 1970年度만을 基準으로 하여 보아도 生命保險中 團體保險이 占하는 比重이 約 70.7%로서 團體保險 保有契約高가 全生命保險保有契約高中에서 3分之 2가까이를 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反해서 個人保險은 不過 29.3% 即 3分之 1에도 未達하는 比重을 占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上述한 바와도 같이 우리나라의 團體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漸進的으로 下落하여 오고 있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나라 生命保險의 構造의 特色中の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우리나라 生保界가 앞으로 指向해 나가야 할 길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¹⁸⁾

다음에 우리나라 生命保險中 個人保險에 있어서는 生存保險이 主軸을 이루고 있으며 이 保險은 個人保險契約中 約 75.7% (1970年度)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新契約이 잘 되는 分野이기도 하며 保險契約高도 純增一路에 있다.⁽¹⁹⁾ 그러나 個人保險 中에서 生存保險이 占하는 比重은 若干씩 下落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死亡保險은 被保險者가 死亡하는 경우에만 保險金을 支給하는 生命保險의 種類이어서 그런지 一般加入者들한테 好感을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保險會社들 中에서도 取扱하지 않고 있는 會社들도 있으며 契約高의 增加도 신통치 못하며 이 保險은 現在에 있어서는 全個人保險中 約 2.5% (1970年度)程度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에 養老保險은 被保險者가 保險滿期까지 生存했거나 途中에 死亡하는 경우 保險金을 支拂하는 種類로서 貯蓄과 保障이 모두 兼備되어 있는 理想的인 保險種類이므로 이 保險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歡迎을 받고 있으며 保險契約高는 每年 增加一路에 있다. 그러나 1970年 現在 個人保險中에서 21.8%로서 約 2割程度의 構成比를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며 앞으로 全生命保險에서 個人保險의 比重이 增加되어 감에 따라서 이 養老保險의 比重도 漸次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日本은 1968年에 養老保險이 個人保險에서 占하는

(17) 韓國保險學會, 『保險學會誌』, 第3輯, p.121.

(18) 前揭書, p.121.

(19) 韓國保險學會, 『保險學會誌』, 創刊號, p.58.

比重이 無慮 56.5%에 達할 뿐만 아니라 獨逸, 佛蘭西, 伊太利, 스웨덴, 스위스 등의 유럽諸國에 있어서도 이 養老保險이 個人保險의 主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個人保險中 教育保險을 包含하는 生存保險이 主軸을 이루고 있고 이 養老保險은 全生命保險中 約 20%程度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다음에 우리나라 團體保險에 對해서 살펴보면 이 團體保險은 官廳, 會社, 工場 등 職場의 從業員을 一括해서 被保險者로 하고 그 團體 또는 被保險者の 代表를 契約者로 하는 保險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團體保險이 全生命保險의 保有契約高에서 占하는 比重이 無慮 70.7%(1970 年度)에 達하고 있다. 大體的으로 外國의 例가 個人保險의 比重이 團體保險보다 높거나 또는 半半 程度인데 比해서 우리나라의 團體保險이 壓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構成比의 比重이 緩慢하게 下落하고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의 構造改善策이 어떠한 點으로 부터 나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되는 바이다.

2. 損保의 種目別構造比較分析

여기서는 18 個의 主要保險國家(벨기에, 덴마크, 獨逸, 佛蘭西, 伊太利,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알제리, 오스트랄리아, 브라질, 日本, 카나다, 멕시코, 뉴질란드, 페루, 美國, 스위스)를 中心으로 1950~1968 年間에 걸친 18 年間의 世界各國의 保險種目別構造比較分析을 試圖하여 보았다.

그런데 上記의 18 個國은 現在 全世界 民營保險 保險料收入總額의 約 90%를 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火災, 自動車, 特種 및 海上保險 等 主要 4 個保險種目的 1968 年度 保險料收入額만도 約 445 億弗에 達한다.

1) 年度別構造比較

지난 10~15 年間에 世界各國의 損保의 收入保險料의 構成에서 保險種目別構造比較를 하여 보면 그간 損害保險部門에서도 커다란 變化를 나타내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 理由는 1950 年代에 있어서는 主로 이면 保險種目的 不良한 實績을 다른 種目이 補充해 주는 一定한 均衡狀態를 維持해 왔는데 反해서 지난 10 年間에 있어서는 이러한 保險種目間의 相互補完의 成長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事實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表現하면 지난 10 年間에 있어서 가장 높은 成長率을 보여준 것은 自動車保險인데 이와는 反對로 相對的으로 全體에서 占하는 比率에 있어서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은 急激한 減少를 보였다. 한편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分野에 있어서는 全體 損害保險實績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別 큰 變動 없이 비슷한 實績成長을 維持하여 왔다. 따라서

지난 20 年間은 營業實績이 不良한 種目的 成長率이 普遍的으로 實績이 좋았던 種目에 比해 높았었다고 볼 수 있다.⁽²⁰⁾

<표 IV-5>

種目別構成比의 變化

年 度 別 種 目 別	1950	1960	1968
火 災 保 險	34.3%	28.3%	19.6%
海 上 保 險	10.1	0.4	5.4
自 動 車 保 險	26.0	36.0	44.7
傷 害 및 賠 傷 保 險	29.6	29.3	30.3
計	100.0	100.0	100.0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火災保險은 1950 年度에는 全體保險料收入總額에서 無慮 34.3%, 約 3 分之 1 以上을 차지한 바 있으나 1960 年度에는 28.3% 그리고 1968 年度에는 19.6%로 漸次로 그의 比重이 떨어지고 있으며 海上保險도 1950 年度에는 10.1%이던 것이 1960 年度에는 6.4% 그리고 1968 年度에는 5.4%로 그의 比重이 역시 떨어지고 있고 이에 反해서 自動車保險에 있어서는 1950 年度에는 26.0%를 占하였음에 不過하였으나 1960 年度에는 36.0%로 增加하고 다시 1968 年度에는 無慮 44.7% 即 約 半 가까이로 增加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은 1950 年度에도 29.6%, 1960 年度에도 29.3% 그리고 1968 年度에도 30.3%로 지난 18 年間을 통하여 別 큰 變動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損害保險分野에 있어서의 保險料의 種目別構成의 두드러진 變化의 趨勢는 最近 2-3年間에 特히 鈍化되기 始作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即 日本이나 알젠텐을 除外한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全損害保險實績에서 個個 種目이 차지하는 比率들이 比較的 安定된 水準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現在의 現象은 一時的 現象일론지 모르나 그렇다고 이러한 最近의 趨勢가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의 復古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誤算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自動車保險은 豐은 保險料據收實績을 나타내고 있고 今後 몇년간에도 이러한 趨勢가 繼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²¹⁾

2) 種目別構造比較

1950~1968 年間에 있어서 損害保險分野의 種目別 構造比較를 하여 보면 火災保險과 海

(20)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6/June), 1970, p.1

(21) 大韓再保險公社, 『保險月報』, 第 91 號, p.31.

上保險은 同期間에 각각 7.2%와 6.8%의 成長밖에는 實現하지 못하고 있는데 反해서 自動車保險과 特種保險은 각각 年平均 9.5%와 9.6%를 示顯하여 다른 保險種目들에 比하여 急速한 成長을 實現시켰음을 發見할 수 있다. ⁽²²⁾

(1) 火災保險

1950~1968 年間의 構造比較를 위해서 아래의 各國을 3 個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면

1950~1968 年間에 있어서 火災保險은 유럽, 北美, 其他國家를 莫論하고 全體 損害保險事業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減少되고 있으며 유럽에 있어서는 27.8%에서 15%로, 北美에서는 22.5%에서 17.5%로, 其他國家에 있어서는 52.3%에서 26.8%로 下落하고 있다.

(2) 海上保險

이와 같은 現象은 海上保險에서도 똑같이 發生하였는데 유럽에서는 1950 年度에 14.5% 이었던 構成比率이 1968 年度에는 5.4%로 下落하였으며 北美에서도 2.2%에서 1.2%로, 其他國家에서는 13.7%에서 10.6%로 각각 下落을 나타내고 있다. ⁽²³⁾

(3)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

한편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發展度가 각각 相異하기 때문에 유럽 및 其他國家에서는 全體에서 위의 種目이 차지하는 比率이 낮고 北美에 있어서는 이것 과는 反對의 實績을 나타내고 있다. 即 1950 年度에는 構成比가 38.3%이던 것이 1968 年度에는 45.7%를 示顯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은 北美大陸에서는 損害保險種目中 가장 規模가 큰 營業種目이 되는 것이다.

(4) 自動車保險

上述한 바와도 같이 損害保險의 全業種目中 自動車保險의 成長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따라서 유럽에서는 全損害保險事業에서 自動車保險이 차지하는 比率이 同期間에 25.5%에서 50%로 成長하였고 其他 大陸에 있어서는 15.1%에서 47.9%로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北美洲에 있어서의 이 自動車保險의 比重은 1950 年度의 37%에서 1968 度에는 35.6%로 別로 變化하고 있지 않음을 發見할 수 있는데 ⁽²⁴⁾ 이의 原因은 市場의 飽和狀態 即 거의 모든 車가 이 自動車保險에 이미 加入되어 있음을 說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主要 保險國家別로 保險種目別 構造比較를 하여 보기로 한다.

(22) 前揭書, p.31.

(23) Swiss Reinsurance Company, *Sigma*, (6/June) 1970, p.2.

(24) 前揭書, p.2.

保 险 種 自 別 構 造 比 較(損害保險):

<표 IV-6>

國家別國內元受保險料收入實績

단위 : 百萬

區 分	年度別			1955			1960			1965			1968		
	各國貨幣	US \$	% ¹⁾	各國貨幣	US \$	% ²⁾	各貨幣	US \$	% ³⁾	各貨幣	US \$	% ⁴⁾			
<u>火災保險</u>															
유 럽															
벨기예	1,661	33.3	—	2,183	43.9	5.6	3,022	60.9	6.8	4,219	84.1	11.5			
덴마크	147	21.2	5.9	183	26.5	4.4	268	38.8	8.0	359	47.7	10.0			
독일	473	112.2	9.5	708	169.8	8.2	1,174	292.9	10.5	1,460	365.1	7.5			
불란서	563	160.8	10.9	912	186.0	10.2	1,653	337.3	12.6	2,218	448.3	7.8			
이태리	21,548	34.5	11.9	29,952	48.3	6.8	54,030	86.5	12.5	74,591	119.6	11.5			
오스트리아	443	17.0	20.0	574	22.0	5.3	878	33.9	8.8	1,129	21.8	8.7			
스웨덴	400	59.8	7.8	439	84.8	7.3	712	137.4	10.1	937	180.8	9.6			
스페인	581	14.9	11.3	1,032	17.2	12.1	2,019	33.7	14.4	3,189	45.7	16.6			
기타국가 (유럽제외)															
알제리	592	32.9	12.0	3,011	36.4	38.4	9,446	50.1	25.7	18,775	53.6	19.2			
오스만트리아	51	22.9	14.2	70	31.1	6.3	90	40.1	5.2	110	49.4	7.0			
브라질	2	32.9	25.7	7	31.6	24.3	70	31.5	60.8	185	48.2	38.1			
일본	44,122	122.3	—	59,191	164.6	6.1	111, 259	308.3	13.3	168, 163	470.1	8.7			
카나다	168	168.1	4.8	239	239.6	7.3	291	270.5	4.0	371	346.2	8.5			
멕시코	181	14.5	16.8	291	23.3	10.0	422	33.8	7.7	596	47.7	12.1			
뉴질랜드	12	4.3	10.4	15	5.5	5.3	24	8.1	8.1	28	12.7	8.1			
페루	89	4.7	11.7	157	5.9	11.8	259	9.7	10.6	404	10.4	16.0			
미국※	2,186	2,185. 7	5.4	3,061	3,060. 6	6.9	4,062	4,061. 5	5.8	5,350	5,350. 2	9.6			
<u>自動車保險</u>															
유 럽															
벨기예	2,327	46.6	—	4,577	92.1	14.5	8,591	173.1	13.4	12,177	242.9	12.2			
덴마크	150	21.6	22.1	281	40.7	13.5	581	84.2	15.6	779	103.9	10.4			
독일	963	228.4	21.7	2,086	500.0	16.7	3,743	934.4	12.4	4,711	1,177. 7	8.0			
불란서	985	281.5	25.0	2,862	583.6	23.8	6,040	1,232. 2	16.2	8,768	1,772. 1	13.7			
이태리	50,566	80.9	28.8	98,980	159.5	14.4	285, 801	457.5	23.7	415, 347	666.2	13.3			
오스트리아	381	12.6	35.6	1,266	48.6	27.2	2,339	90.3	13.1	3,426	132.1	13.5			
스웨덴	276	53.2	26.0	381	73.6	6.7	892	172.2	18.2	1,061	204.8	5.9			

年度別 區 分	1955			1960			1965			1968		
	各貨	國幣	US \$	% ¹⁾	各貨	國幣	US \$	% ²⁾	各貨	國幣	US \$	% ³⁾
스위스	139	32.4	12.9	244	56.7	12.0	507	117.5	15.2	595	138.3	8.3
스페인	477	12.2	25.2	1,612	26.8	27.6	7,382	123.1	35.6	12,381	177.3	18.8
기타국가 (유럽제외)												
알제리	396	22.0	24.7	2,908	35.2	48.9	4,889	39.0	38.7	51,063	145.9	50.7
오스트리아	80	35.6	30.4	138	61.3	11.5	227	100.9	10.5	294	132.6	9.0
브라질	1	6.0	32.0	2	9.8	38.0	35	15.9	77.6	111	29.0	46.5
일본	6,661	18.5	—	21,461	59.7	23.5	117, 883	326.6	40.6	290, 722	812.8	35.1
캐나다	204	204.2	—	329	330.7	10.1	589	548.0	12.3	789	735.2	10.0
멕시코	123	19.9	24.3	256	20.5	16.3	431	34.5	11.0	659	52.8	15.1
뉴질랜드	12	4.3	21.0	19	6.9	9.6	28	10.1	8.2	39	17.2	10.8
페루	46	2.4	10.0	111	4.2	19.2	263	9.8	18.7	409	10.6	15.9
미국	4,223	4,222. 7	8.3	5,877	5,876. 9	6.9	8,285	8,284. 5	7.1	10,873	10,873	9.5
傷害保険												
유럽												
벨기에	2,469	49.4	—	3,351	71.1	7.4	5,612	113.1	9.7	7,123	142.1	8.3
덴마크	134	19.4	6.9	218	30.1	9.1	390	56.6	13.2	558	74.4	12.7
독일	1,063	252.3	12.9	1,914	458.8	12.1	3,561	888.9	13.5	5,131	1,282. 8	12.9
불란서	555	158.5	16.7	1,116	227.5	15.0	1,848	377.0	10.6	2,598	524.9	12.0
이태리	14,061	22.5	22.9	38,518	62.1	22.6	78,504	125.7	15.3	115, 898	185.9	13.8
오스트리아	368	14.1	15.2	747	28.7	12.7	1,363	52.6	12.7	1,939	37.5	12.2
스웨덴	134	25.9	3.0	191	36.9	7.3	267	51.6	6.9	331	63.8	7.4
스위스	197	45.9	8.2	303	70.4	9.1	538	124.5	12.1	739	171.8	11.2
스페인	1,826	46.9	12.7	3,839	63.8	16.0	9,747	162.5	20.5	13,916	199.3	12.5
기타국가 (유럽제외)												
알제리	506	28.1	11.7	2,326	28.1	35.6	6,883	36.5	24.2	13,542	38.7	38.4
오스트리아	54	23.9	16.1	96	438.0	12.4	145	64.4	8.6	189	84.6	9.3
브라질	2	26.4	16.5	8	46.0	40.5	112	50.4	66.0	382	99.7	50.5
일본	604	1.7	—	1,594	44	21.4	6,187	17.1	31.2	172	64.8	55.3
캐나다	173	173.6	—	240	240.6	6.7	366	340.6	8.8	521	485.2	12.4
멕시코	31	2.4	20.7	60	4.8	14.4	102	8.2	11.3	156	12.5	15.1
뉴질랜드	7	2.4	8.8	10	3.8	9.2	17	6.1	10.2	20	1.9	50.3

年 度 別 區 分	1955				1960				1965				1968			
	各 貨 幣	U.S. \$	% ¹⁾	各 貨 幣	U.S. \$	% ²⁾	各 貨 幣	U.S. \$	% ³⁾	各 貨 幣	U.S. \$	% ⁴⁾				
페 류	52	2.7	23.7	106	4.0	15.5	300	11.2	23.1	405	8.0	10.3				
미 국	4,802	4,802.0	10.1	7,766	7,765.9	10.1	11,084	11,083.6	7.4	14,862	14,386	50.1				
<u>海上保険</u>																
유 럽																
벨 기 에	—	—	—	355	7.1	—	412	8.3	3.0	518	19.3	7.9				
덴 마 크	79	11.5	0.5	101	14.6	5.0	130	18.8	5.1	187	24.9	12.9				
독 일	223	52.9	20.9	38.9	93.3	11.7	564	140.8	7.7	656	164.1	5.2				
불 란 서	185	52.8	-0.1	336	68.6	12.6	422	86.1	4.7	485	98.1	4.8				
이 태 리	19,261	30.8	8.0	26,361	42.5	6.1	34,250	54.8	8.2	50,734	81.4	14.0				
오스트리아	47	1.8	—	76	2.9	10.1	118	4.6	9.2	161	6.2	10.9				
스 웨 덴	132	25.4	4.0	168	32.9	5.1	200	38.6	3.6	251	48.5	7.9				
스 위 스	30	7.0	-0.9	37	8.7	4.6	59	13.7	9.6	83	19.1	12.0				
스 페 인	522	13.4	9.7	1,082	18.0	15.8	2,070	34.5	13.7	2,830	40.5	11.0				
기 타 국 가 (유럽제외)																
알 젠 텐	199	11.1	17.4	1,621	19.6	52.1	3,895	20.7	19.1	8,022	22.9	27.2				
오 스 트 라	13	5.9	9.2	16	7.2	3.8	23	10.4	7.7	29	13.0	7.3				
브 라 질	1	12.4	14	2	10.1	91.3	19	8.5	55.0	54	14.9	41.9				
일 본	16,618	46.1	—	29,242	81.3	11.8	48,323	133.9	10.5	73,439	205.5	15.0				
카 나 다	10	10.1	—	12	12.3	5.6	13	12.0	1.1	17	16.0	10.0				
멕 시 코	87	6.9	23.3	144	11.5	10.8	186	14.9	5.2	283	22.7	15.1				
페 류	34	1.8	22.1	71	2.7	11.6	132	4.9	13.0	340	8.8	36.9				
미 국	168	168.0	-0.3	230	230.4	6.5	262	261.7	2.6	360	360.2	11.1				

자료 : Swiss Reinsurance Company, Zurich, *Sigma*, (6/June), 1970, pp. 10-13.

주 : %는 各國貨幣로 본 年間成長率임.

1)은 1950~1955年間임.

2)는 1955~1960年間임.

3)은 1960~1965年間임.

4)는 1965~1968年間임.

※는 擴張擔保 및 복합위험 포함.

(1) 美 國

美國에서는 海上火災以外의 保險 即 特種保險이 高度로 發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保險이라면 海上保險을 聯想하기 쉽고 또 그 比重도 매우 큰 것으로 느끼기 쉬우나 美國

<玆 IV-7>

國 別 種 目 別 構 造 比 較(元受保険料收入面에서)

단위 : 百萬

- 44 -

年 度 別 區 分	1955				1960				1965				1968			
	各國貨幣	US \$	% ⁽¹⁾	構成比	各國貨幣	US \$	% ⁽²⁾	構成比	各國貨幣	US \$	% ⁽³⁾	構成比	各國貨幣	US \$	% ⁽⁴⁾	構成比
美國	2,189	2,185.7	5.4	19.2	3,061	3,060.6	6.9	18.3	4,062	4,061.5	5.8	17.1	5,350	5,350.2	9.6	17.0
火災保険	4,223	4,222.7	8.3	33.7.1	5,877	5,876.9	6.9	35.1	8,285	8,284.5	7.1	34.9	10,873	10,873.0	9.5	34.5
自動車保険	4,802	4,802.0	10.1	42.2	7,766	7,765.9	10.1	40.5	11,084	11,083.6	7.4	46.7	14,862	14,862.0	50.1	47.2
自傷海賠	168	168.0	-0.3	1.5	230	230.4	6.5	6.2	262	261.7	2.6	1.3	360	360.2	11.1	1.3
上計	10,382	11,378.4			16,704	16,933.8			23,693	23,691.3			31,445	31,445.4		
獨火災保険	474	112.2	9.5	17.3	708	169.8	8.2	13.8	1,174	292.9	10.5	12.9	1,460	365.1	7.5	12.2
自動車保険	963	228.4	21.7	35.3	2,086	500.0	16.7	40.9	3,743	934.4	12.4	41.3	4,711	1,177.7	8.0	39.4
自傷海賠	1,063	252.3	12.9	39.1	1,914	458.8	12.1	37.5	3,561	888.9	13.5	39.3	5,131	1,282.8	12.9	43.2
上計	223	52.8	20.9	8.3	38.9	93.3	11.7	7.8	564	140.8	7.7	6.5	656	164.1	5.2	5.2
佛蘭西	2,722	645.7			5,097	1,221.9			9,042	2,257.0			11,958	29,897		
火災保険	563	160.8	10.9	24.6	912	186.0	10.2	17.5	1,653	337.3	12.6	16.6	2,218	448.3	7.8	15.7
自動車保険	985	281.5	25.0	43.1	2,862	583.6	23.8	54.7	6,040	1,232.2	16.2	60.6	8,768	1,772.1	13.7	62.3
自傷海賠	555	158.5	16.7	24.2	1,116	227.5	15.0	21.3	1,848	377.0	10.6	18.5	2,598	524.9	12.0	18.4
上計	185	52.8	-0.1	8.1	336	68.6	12.6	6.5	422	86.1	4.7	4.3	485	98.1	4.8	3.6
日本	2,288	653.6			5,226	1,065.7			9,953	2,032.6			14,069	2,843.4		
火災保険	44,122	122.3	-64.8	59,191	164.6	6.1	153.0	111,259	308.3	13.3	39.2	168,163	470.1	8.7	30.2	
自動車保険	6,661	18.5	-9.8	21,461	59.7	23.5	19.2	117,883	326.6	40.6	41.5	290,722	812.8	39.1	52.3	
自傷海賠	604	1.7	-1.0	1,594	4.4	21.4	1.6	6,189	17.1	31.2	2.3	23,172	64.8	55.3	4.3	
上計	16,618	46.1	-24.4	29,242	81.3	11.8	26.2	48,323	133.9	10.5	17.0	73,439	205.5	15.0	13.2	
合計	68,005	188.6		111,488	310.0			283,652	783.9			555,496	1,553.2			

주 : %는 各國貨幣로 是 年間成長率[%]。

1)은 1950~1955년間입. 2)는 1955~1960년間입. 3)은 1960~1965년間입. 4)는 1965~1968년間입.

에서는 海上保險은 Inland Marine 까지 包含하여 約 1.3%程度에 不過하다.

火災保險 역시 保險料가 約 53 億弗에 達하고 있는 하나 對 全保險料의 比率은 約 17.0%에 不過하다. 이에 反해서 自動車保險料가 108 億弗 程度에 達하여 全種目的 約 34.5 %로 占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 火災保險, 海上保險을 複層凌駕하고 있는 點이 美國 損害保險市場의 特徵이기도 하다. 이것은 勿論 美國의 自動車臺數를 話함과 同時に 自動車保險의 경우에는 第 3 者에 對한 責任保險이라는 火災保險에 없는 部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美國의 損害保險市場의 또 하나의 特徵은 勞動者災害補償保險을 包含하는 特種保險이 顯著하게 發達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美國의 保險種目別構造도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差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火災保險의 경우를 考察하면 火災保險은 1955 年(1950~1955年間成長率)에 19.2%의 比重에서 1968 年(1965~1968年間成長率)에 17.0%로 下落하고 있는데 이것도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부합하고 但 1950~1968 年 사이에 유럽에서 27.8%에서 15%로, 北美洲가 22.5%에서 17.5%로, 其他國家에 있어서 52.3%에서 26.8%로 下落한 것과 比較하여 보면 美國의 경우는 若干 緩慢한 速度로 下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海上保險은 1955 年(同上)에는 그의 構成比가 全體保險料收入의 1.5%에 不過하였으나 1960 年(同上)에 6.2%로 上昇하였다가 1965 年(同上)과 1968 年(同上)에 다시 1.3%로 下落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美國도 其他諸國의 一般的 傾向과 같이 漸次로 遷減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特히 美國에 있어서는 海上保險의 發達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反해서 傷害保險에 있어서는 그의 發達이 顯著하여 1955 年(同上)에는 그의 構成比가 42.2%에 不過하였으나 1960 年(同上)에는 40.5%, 1965 年(同上)에는 46.7% 그리고 1968 年(同上)에는 47.2%로 增加되어 왔다. 이와 같이 美國에서는 社會保障性이 높은 特種保險이 크게 發達되어 있음을 이와 같은 資料를 通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끝으로 自動車保險은 美國에서 큰 比重을 占하고 있는 하나 現段階에서는 停滯되어 있는 實情에 있다. 具體的으로 美國의 自動車保險은 1955 年(同上)에는 그의 構成比가 47.1%를 占하고 있었으나 그 後 그의 比重이 漸次로 下落하여 1960 年(同上)에는 35.1%, 1965 年(同上)에는 34.9% 그리고 1968 年(同上)에는 34.5%로 遷減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이의 主要한 理由는 美國에서의 自動車保有臺數가 飽和狀態에 到達하고 있기 때-

문이다.

(2) 獨逸

다음에 獨逸의 保險種目別構造를 살펴보면 먼저 獨逸의 火災保險도 其他諸國의 一般的傾向과 같이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遞減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獨逸의 火災保險은 1955年(同上)에는 19.2% 이던 것이 1960年(同上)에는 18.3%, 1965年(同上)에는 17.1% 그리고 1968年(同上)에는 17.0%로 減少되고 있다.

이것과 같이 海上保險에 있어서도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減少하고 있는데 即 1955年(同上)에는 그의 構成比가 8.3%이었으나 1960年(同上)에는 7.8%, 1965年(同上)에는 6.5% 그리고 1968年(同上)에는 5.2%로 遞減하고 있다.

獨逸의 火災保險構成比의 下落率은 유럽의 27.8%에서 15%, 北美的 22.5%에서 17.5%, 其他國家들의 52.3%에서 26.8%의 下落率과 比較할 때 若干 緩慢하고 또 獨逸의 海上保險의 構成比의 下落率도 유럽의 14.5%에서 5.4%, 北美的 2.2%에서 1.2%로, 其他國家의 13.7%에서 10.6%와 比較해 볼 때 이것도 下落率이 若干 緩慢하다.

이에 反해서 傷害保險은 1955年(同上)의 39.1%에서 1960年(同上)에는 37.5%로 下落했다가 다시 1965年(同上)에는 39.3% 그리고 1968年(同上)에는 43.2%로 漸次로 增加하고 있고 또 獨逸의 自動車保險도 世界諸國의 一般的傾向과 같이 1955年(同上)에는 35.3%이었으나 1960年(同上)에는 40.9%, 1965年(同上)에는 41.3% 그리고 1968年(同上)에는 39.4%로 되어 그간의 急速한 成長이 最近에 와서若干 鈍化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3) 佛蘭西

佛蘭西의 種目別構造의 變化를 보면 佛蘭西에 있어서는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의 그 構成比가 漸次로 減少하고 있는 것은勿論 傷害保險으로 代表되는 特種保險에 있어서도 그의 構成比가 遞減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이에 反해서 自動車保險은 매우 急速한 速度로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고 있다.

먼저 火災保險에 對해서 이를 보면 이것은 1955年(同上)에 그의 構成比가 無慮 24.6%를 占하고 있었으나 漸次로 減少하여 1960年(同上)에 17.5%, 1965年(同上)에 16.6% 그리고 1968年(同上)에는 15.7%로 減少되어 同期間中에 無慮 8.9%나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同期間中의 유럽地域의 火災保險構成比의 下落率 27.8%에서 15%보다는 若干 緩慢한 것이다.

海上保險도 1955年(同上)에는 8.1%이었으나 1960年(同上)에는 6.5%, 1965年(同上)

에는 4.3% 그리고 1968 年(同上)에는 3.6%로 急速한 速度로 下落하였다.

傷害保險을 包含하는 特種保險도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는 달리 1955 年(同上)에는 24.2%이던 것이 1960 年(同上)에는 21.3%, 1965 年(同上)에는 18.5% 그리고 1968 年(同上)에는 18.4%로 下落하고 있다.

이에 反해서 自動車保險은 1955 年(同上)에는 그의 構成比가 43.1%이던 것이 1960 年(同上)에는 54.7%, 1965 年(同上)에는 60.6% 그리고 1968 年(同上)에는 62.3%로 佛蘭西의 自動車保險은 同期間에 無慮 19.2%나 增加하고 있다.

(4) 日 本

日本의 種目別構造의 變化에 있어서는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같이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遰減하는 傾向이 있는 反面 傷害保險으로 代表되는 特種保險과 自動車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保險種目別構造의 特色은 그것들이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같이 變動하고 있기는 하나 日本의 경우에는 火災保險과 海上保險 등이 外國의 경우에 比해서 아직까지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먼저 火災保險의 경우를 考察하면 日本의 그것은 1955 年(同上)에는 無慮 64.8%를 占하고 있었으나 1960 年(同上)에는 53.0%, 1965 年(同上)에는 39.2% 그리고 1968 年(同上)에는 30.2%로 그의 比重이 漸次로 下落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日本의 火災保險은 1968 年에 이르러서까지 全體保險料收入의 3 分之 1 以上을 確保하고 있다는 것은 其他 先進國들에서 좀체로 發見하기 어려운 特色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海上保險을 살펴보면 日本의 海上保險도 1955 年(同上)에는 그의 構成比가 24.4%이었으나 1960 年(同上)에는 26.6%로 增加하였다가 1965 年(同上)에는 17.0%로 다시 下落하고 1968 年(同上)에는 다시 이것이 13.2%로 下落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日本의 海上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漸次로 下落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日本의 海上保險이 그 構成比에 있어서는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같이 下落하고는 있으나 그 規模에 있어서는 其他國과는 달리 아직 매우 큰 것을 發見할 수 있다.

이에 反해서 傷害保險으로 代表되는 特種保險은 그의 構成比의 成長速度에 있어서는 매우 크나 日本에 있어서는 아직 그 規模는 보잘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即 그것은 1955 年(同上)에는 그 構成比가 1.0%에 不過하였으나 1960 年(同上)에는 1.6%, 1965 年(同上)에는 2.3% 그리고 1968 年(同上)에는 4.3%로 增加하고 있다.

이에對해서 日本의 自動車保險은 그構成比의 成長速度가 매우急速할 뿐만 아니라 그規模에 있어서도 1968年에 벌써 50%를 넘어서고 있다. 即 日本의 自動車保險은 1955年(同上)에는 그構成比가 9.8%에 不過하였으나 1960年(同上)에는 19.2%, 1965年(同上)에는 41.5% 그리고 1968年(同上)에는 無慮 52.3%로 그의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日本의 自動車保險의 最近의 이와 같은急速한 成長의 主要原因是 日本이 近年の 自動車製造工業의急速한 發展으로 自動車保險에 對한 付保量이 많이 增加했기 때문이다.

<표 IV-8>

損保의 種目別 構造(韓國)

年度別 區 分	1960			1962			1964		
	各國貨幣	%	構成比	各國貨幣	%	構成比	各國貨幣	%	構成比
韓 國									
火災保險	452		85.4	469	3.8	73.1	531	12.7	41.2
自動車保險	—			20		3.1	231	1,055.0	17.9
特種保險	—			2		0.3	33	1,550.0	2.8
海上保險	77		14.6	151	46.1	23.5	491	225.1	38.1
計	529		100.0	642		100.0	1,286		100.0
	1966			1967			1968		
韓 國									
火災保險	1,009	90.0	22.2	1,283	27.1	20.9	1,717	33.8	20.3
自動車保險	980	324.2	21.7	1,296	32.2	21.1	1,418	9.4	17.0
特種保險	1,1114	3,274.2	24.5	2,254	102.3	36.8	2,701	19.8	31.9
海上保險	1,438	192.8	31.6	1,281	△10.9	21.2	2,607	103.4	30.8
計	4,541		100.0	6,114		100.0	8,443		100.0

(5) 韓 國

韓國도 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에 있어서 世界各國의一般的 傾向과 大體적으로는 同一한 方向을 걷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먼저 火災保險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火災保險은 1960年에는 그의構成比가 全體損害保險料收入總額의 無慮 85.4%를 占하고 있었으나 1964年에는 그의構成比가 41.2%로 떨어지고 1968年에는 20.3%로 下落하여 우리나라 火災保險의構成比가 外國에서 그의例를 찾아 보기 힘들 程度의急速한 speed로 下落하여 왔음을 發見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海上保險도 1960年에는 그의構成比가 14.6%에 不過하였으나 1964年에는 그의構成比가 38.1%로 增加하였고 그後 그의比重이漸次로 下落하여 1968年에는

30.8%까지 下落되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海上保險의 比重이 最近漸次로 遞減하는 傾向에 있는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海上保險의 1968年에 있어서의 30.8%의 構成比는 위에서 考察한 바 있는 美國의 3.6%, 獨逸의 5.2%, 佛蘭西의 3.6%, 日本의 13.2%와 比較해 볼 때 아직도 큰 規模에 머물러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에 反해서 우리나라의 特種保險은 그 동안 매우 急速한 速度로 그의 比重이 增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即 우리나라 特種保險은 1960年에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었고 1962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0.3%에 不過하였으나 1964年에는 2.8%로 增加하고 그후 急速하게 그의 構成比가 늘어나서 1968年에는 無慮 31.9%까지 增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特種保險의 發達은 新種商品의 開發이 活潑해짐에 따라 需要의 急速한 增加를 보이고 있는 데에 主要한 原因이 있는 것 같으며 現在 우리나라에서 販賣되고 있는 27種의 商品中 主力商品의 構成比는 大體로 다음과 같다.

- | | |
|-----------------|--------------------------|
| (가) 勞災保險 32.7% | (마) 賠償責任保險 |
| (나) 保證保險 20.4% | (바) 汽罐機械保險 |
| (다) 航空保險 10.4% | (사) 組立保險 ⁽²⁵⁾ |
| (라) 割賦販賣保險 8.0% | |

또 우리나라 自動車保險은 1960年에는 하나의 實績도 없었으나 1962年에는 그의 構成比가 3.1%로 增加하고 그후 急速的인 成長을 이루하여 1964年에 17.9%, 1966年에 21.7%, 1967年에 21.1% 그리고 1968年에 17.0%로서 어느 程度 安定된 趨勢를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도 어느 程度 飽和狀態에 들어간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保險種目別構成을 보면 外國과는 달리 어느 程度 均衡을維持하면서 發展해 가는 安定된段階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된다.

끝으로 지난 18年間의 損害保險分野의 全般的인 實績趨勢는 유럽 및 其他國家에서는 火災 및 海上保險이 全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漸次的으로 減少되는 反面 自動車保險의 比率이 急激히 上昇하였으며 北美에서는 傷害保險의 實績이 急激히 上昇하여 왔음을 發見할 수 있다.

이러한 趨勢들은 損害保險의 營業實績들이 漸次 自動車保險의 發達에 따라 左右된다는 것을 意味하며 1968年度 保險料收入은 유럽과 其他國家에서는 自動車保險과 이를 除

(25) 韓國保險學會, 『保險學會誌』, 第6輯, pp. 10-11.

外한 餘他의 保險種目實績의 合計와 같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을 程度이다.

V. 結論

1.

60 年代(1959~69 年)의 우리나라의 保險料成長率은 世界的으로 最高水準을 示顯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同期間中 經常價格으로 年平均增加率 39.9%, 純成長率로 24.8%나 되며 65 年度以後 5 年間平均은 無慮 40.6%의 高度의 保險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同期間中의 日本의 22.5%, 스페인의 16.2%, 伊太利의 14.5%, 알젠텁의 14.4%, 獨逸의 13.5%, 오스트리아의 12.9%, 佛蘭西의 12.0%, 베델란드의 11.5%, 덴마크의 10.5%, 스위스의 10.1%, 뱃지움의 9.2%, 오스트랄리아의 9.0%, 南아프리카의 8.3%, 놀웨이의 8.0%, 스웨덴의 7.8%, 美國의 7.5%, 印度의 7.0%, 카나다의 6.8%, 뉴질랜드의 6.3%, 英國의 6.2%를 모두 超過하고 있다(表參照).

그뿐만 아니라 過去 15 年間 世界主要 保險國家들의 保險料成長과 保險種目別 構造變化를 살펴 본 結果 거의 稚半의 國家에 있어서 自國의 保險料成長率이 自國의 國民所得成長率을 超過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即 1965 年度만을 比較해 보아도 美國은 經濟成長率이 年 8.1%인데 保險料成長率은 年 9.0%이며 西獨은 經濟成長率이 年 8.2%인데 保險料成長率은 年 13.4%, 日本은 經濟成長率이 年 11.6%인데 保險料成長率은 年 20.5%이다. 우리나라도 世界各國의一般的 傾向과 같이 1965 年度의 經濟成長率은 年 7.4%인데 保險料成長率은 無慮 年 57.5%를 나타냈다.

2.

우리가 1951~1966 年에 걸치는 15 年間 各國의 保險成長率의 變化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興味 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即 1951~1958 年 사이의 前半期에는 損保事業의 成長率(381%)이 生保의 그것(226%)을 훨씬 上廻하고 있는데 反해서 1958~1966 年의 後半期에는 生保成長率(729%)이 損保의 그것(402%)을 오히려 上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半期別成長率이 위에서 檢討한 諸國과 相異한 나라들도 많이 있다. 即 덴마크, 伊太利, 풀투칼, 스위스 및 美國의 5 個國은 損保의 成長率이 生保에 比해서 前·後半期를 通해서 훨씬 上廻하고 있다. 이와는 反對로 印度의 경우는 全期間中 生保의 成長率이 損保에 比해 높았고 獨逸과 佛蘭西는 兩保險種目에 걸쳐 거의 均等한 成長率을 나타냈다.

위에서 檢討한 여러나라들을 다음과 같은 네個의 集團으로 区分할 수 있는데 第 1 集團은 벤마크, 伊太利, 풀루칼, 스위스 및 美國 등이며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는 總收入保險料中 生保分이 顯著하게 減少하는 反面 損保分이 顯著하게 增加하고 있다.

第 2 集團은 印度 및 日本으로서 이들 國家는 總收入保險料中 生保分이 繼續 顯著하게 增加하고 있다. 第 3 集團은 獨逸, 佛蘭西, 놀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이고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는 生保部門의 實績이 比較的 安定되어 있으며 單只 스웨덴만이 國家의 干涉에 依해서 急激한 變化가 있었다. 第 4 集團은 핀란드이며 이 나라는 1961 年 以來로 始作한 急激한 上昇勢는 國家의 干涉에 依한 것이었기 때문에 例外에 屬한다.

그런데 韓國에 있어서는 生保가 損保에 比해서 急速한 速度로 成長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前半期(1956~1958 年)에 있어서도 生保가 472.7%의 成長率을 보였는데 反해 損保는 겨우 31.1%의 成長率밖에 보이지 못하였으며 後半期(1959~1969 年)에도 生保는 1,293.3%의 成長率을 보였는데 損保는 879.6%의 成長率을 보였다.

이를 뒷 받침 하는 것으로서 1956 年度에는 總保險料收入에서 生保가 占하는 比重이 0.01 %에 不過하였으나 1958 年度에는 35.2%, 1963 年에는 62.9%, 1966 年度에는 43.5% 그리고 1969 年度에는 47.9%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本人은 韓國을 위의 네 集團中 第 3 集團에 包含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總保險料收入가운데 生保分이 占하는 比重이 過去 即 1963 年까지는 急速하게 增加하여 왔으나 64 年 以後에 들어와서는 生保分이 安定勢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

各國의 國民所得에 對한 生命保險料收入이 占하는 比重을 1958~1963 年까지 사이의 5 個年間의 傾向에서 살펴 보면 멕시코만이 不變이고 스위스만이 減少하고 있을 뿐 其他國은 모두 增加하고 있다. 自國의 國民所得中 生命保險料가 占하는 比重이 가장 큰 國家는 英國의 4.06%(63 年)와 美國의 3.35%(63 年)이다. 그러나 韓國은 1958 年度에도 0.12%로 가장 低位이고 1963 年度에도 0.30%로서 멕시코와 같이 가장 낮다.

各國의 國民所得에 對한 損害保險料收入이 占하는 比重도 1960 年度의 最高는 오스트랄리아의 3.4%이며 最低는 印度의 0.27%이고 이에 對해서 日本은 1%에 未達하여 21 位이며 韓國은 0.18%로 印度보다 더 下位이다.

다음에 各國의 國民所得에 對한 生命保險料와 損害保險料의 각각의 比率은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損害保險料의 比率이 크다. 單只 카나다에 있어서는 生保의 比重이 크고 日

本에 있어서는 特히 顯著하게 크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인프레」의 傾向에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生命保險料의 比重이 훨씬 적다. 韓國은 1963 年度에 있어서 約半의 國家와는 달리 生保가 損保에 比해서 그의 比重이 큰 것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66 年度를 契機로 해서 反轉된다.

그러나 1958 年과 1963 年을 國際間에 比較해 보면 멕시코를 除外하고는 각국이 모두 1958 年에 比해 1963 年에 그의 比率이漸次로 높아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이들 諸國中 8%以上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英國의 8.57%와 美國의 8.01%뿐이고 멕시코는 0.83%로 가장 低位에 있는 나라이나 韓國은 그보다 一層 낮아 58 年度에 0.34%, 63 年度에 0.47%를 나타내고 있다.

4.

保險會社의 部門別 國際比較를 하여 보면 71 個 主要保險國家의 9,701 個의 保險會社中 生命保險業務만을 專擔하는 保險會社는 2,676 個社로서 全體 保險會社數의 27.6%에 達하며 이에 反해서 損害保險業務만을 專擔하는 會社가 6,063 個社로서 62.5% 그리고 生·損保兼營이 962 個社로서 9.9%를 占하고 있다.

5.

保險會社의 地域別構造는 71 個 主要保險國家의 9,701 個社中 유럽地域에서 保險事業을 營爲하고 있는 民營保險會社數가 全體의 48.8% 即 4,737 個社이고 美洲地域에 42.5%의 4,125 個社, 아시아洲에 3% 即 291 個社, 아프리카洲에 2.2%인 210 個社 및 太平洋에 3.5%로서 342 個社가 分布되어 있다.

한편 生·損保 및 生·損保兼業會社의 地域別構造를 보면 먼저 生保社에 있어서 유럽에 28%, 美洲에 68.3%가 있는 反面 損保社 및 兼業會社에 있어서는 反對로 유럽에 각각 55.5% 및 64.4%이며 美洲에 각각 34.9% 및 18.9%가 分布되어 있다.

6.

41 個 主要保險國家들中에서 國內自國社와 國內駐在外國社를 包含한 總保險會社數를 볼 때 世界에서 가장 多은 保險會社를 保有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며 1968 年末 現在 3,351 個社로 世界 第1位이고 다음이 스웨덴의 884 個社로서 第2位 그리고 第3位는 865 個社를 가지고 있는 獨逸이고 以上의 3 個國이 41 個, 主要保險國家의 全體保險會社中 約 45.9%를 保有하는 計算이 된다. 그 다음이 스페인의 775 個社, 덴마크의 734 個社, 네덜란

드의 678 個社, 佛蘭西의 541 個社의 順序로 되어 있다.

한편 50 個社以下로 되어 있는 國家는 아이스랜드, 터키, 파나마, 페루, 베네주엘라, 양고라, 모잠비크, 이란, 韓國뿐이며 특히 아시아洲에서 50 個社以下の 나라는 韓國의 24 個社와 이란의 16 個社뿐이다.

7.

41 個 主要保險國家의 保險密集度를 國際比較하여 보면 上記 41 個 國家中 가장 保險密集度가 높은 國家는 덴마크의 151.65 로서 第 1 位이고 다음이 아이스랜드의 150.00 으로서 第 2 位, 스웨덴이 112.32 로서 第 3 位이며 네덜란드가 53.81 으로서 第 4 位이다. 그런데 이 保險密集度는 付保人員 萬名當 保險會社數로 計算되어 있으므로 付保人員數와 保險會社數間의 相對的 關係로서 表示된다. 따라서 付保人員數가 적으면 적을수록 保險會社數가 많으면 많을 수록 保險密集度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以上的 諸國家들을 볼 때 保險密集度가 주로 큰 國家들이 歐羅巴地域에 密集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41 個 主要保險國家들 가운데 特히 主要國家만을 抽出하여 保險密集度를 살펴 보면 獨逸이 14.99, 佛蘭西가 10.84, 英國이 8.89, 美國이 16.83, 日本이 0.8, 比律賓이 5.03, 韓國이 2.72 로서 主로 保險密集度들이 8~16 사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고 이와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保險密集度는 世界諸國의 그것과 比較해 볼 때 大體的으로 低位에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8.

各國 保險會社의 國內外營業比較를 하여 보면 國內駐在外國社보다 自國의 海外支社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美國의 8.314로 第 1 位이고 英國이 9.537로서 第 2 位, 스위스가 7.276 으로서 第 3 位 그리고 獨逸이 2.000 으로서 第 4 位이다. 이 以外에도 핀란드, 佛蘭西, 伊太利, 스웨덴, 페루 등이 있고 그 以外의 國家들은 모두 國內駐在外國社보다 自國의 海外支社를 적게 가지고 있거나 또는 全然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9.

保險會社의 保險種目別構造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興味있는 傾向을 發見할 수 있다. 即 政府가 自國의 保險會社數를 統制하고 있는 國家와 그렇지 않은 國家와의 사이에는 保險種目別構造를 大體的으로 달리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世界에서 保險會社數를 量的으로 統制하고 있는 國家는 日本과 韓國뿐이며 다른 나라들은 質的統制는 할지라도 量的統

制는 實施하고 있지 않다.

于先 政府가 自國의 保險會社數의 量的統制를 實施하고 있는 나라(日本 및 韓國)의 경 우를 보면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는 生命保險會社數(外國社包含)가 全體保險會社數中에 서 點하는 比重이 30~40%사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反해서 損害保險會社數가 全體保 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이 58~66%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政府가 自國의 保險 會社數에 對해서 量的統制를 實施하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比해서 生命保險會社數의 比重이 크고 또 한편 損害保險會社數의 比重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政府가 自國의 保險會社數에 對해서 量的統制를 加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의 類型이 있으며 이와같은 나라들은 現在 韓國과 日本을 除外한 其他國들이며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는 確定的인 것은 못되나 自國의 生命保險會社數가 全體保險會社數에서 占하는 比重이 大體的으로 約 10~20% 사이이고 덴마크, 和蘭, 놀웨이, 알젠틴과 같은 나라는 10% 未滿이고 英國, 美國, 스위스, 에집트와 같은 나라는 20%를 若干 超過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韓國은 日本과 거의 同一한 類型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그 나라의 全體生命保險中 團體保險과 個人保險의 構造는 國家에 따라서 반드시 同一한 것은 아니나 大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即 16 個의 主要保險國家들의 保有契約高와 契約件數를 中心으로 團體와 個人別로 그의 構造를 살펴보면 16 個의 主要保險國家中 團體保險의 構成比가 50%以上의 나라는 5 個國(佛蘭西, 스웨덴, 더키, 알젠틴, 멕시코)에 不過하고 殘餘 11 個國家는 個人保險의 構成比가 50%以上을 超過하고 있다.

生命保險의 保有契約高를 基準으로 보아서 가장 團體保險의 比重이 높은 나라는 알젠틴의 88.7%이며 다음이 스웨덴의 83.9%, 셋째가 佛蘭西의 63.1%, 네째가 더키의 62.0%, 다섯째가 멕시코의 53.0%의 順序로 되어 있다. 이에 反해서 團體保險의 比重이 낮은 國家는 獨逸로서 9.7%이며 英國이 21.2%, 日本은 16.4%, 네델란드는 契約件數에 있어서 12.8%이다.

다음에 個人保險의 比重이 큰나라는 保險契約高를 基準으로 하여 獨逸이 90.3%로서 가 장 높고 第 2 位가 日本으로서 83.6%, 第 3 位가 英國으로서 78.8%, 第 4 位가 伊太利의 75.9%, 第 5 位가 니카라구아의 64.4%, 다음이 페루의 62.8%, 스위스의 58.7%, 美國의 57.5%, 네델란드의 57.4%, 카나다의 55.4%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볼 때 全體生命保險中 個人保險의 比重이 큰 國家中에는 經濟的先進國家들이

많고 그의 主要한 理由로서는 特히 個人保險의 廣範圍한 分布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으며 反面 美國과 카나다는 團體와 個人保險이 對等한 比率을 보이고 있다.

韓國은 全體生命保險中 團體保險의 比重이 壓倒的이라는 데 그의 特色이 있다. 即 1962 年에 團體保險의 比重은 無慮 79.4%이었으나 1970 年에는 70.7%로 그의 比重이 若干 減少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70% 以上이라는 큰 比重을 維持하고 있다. 그런데 團體保險의 比重이 韓國보다 큰 나라는 알젠틴의 88.7%와 스웨덴의 83.9%뿐이다.

11.

各國의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를 1960~1968 年에 걸쳐 比較하여 보면 먼저 個人保險에 있어서

1) 定期保險은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生命保險保有契約高의 構成比率에서 增加하였다. 特히 이 定期保險은 스위스, 伊太利, 오스트랄리아, 이스라엘, 日本에 있어서 顯著하게 增加를 보이었다.

2) 養老保險과 終身保險은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下落을 보이고 있다. 이 養老保險은 同期間中 1960 年의 76.6%에서 1968 年에 78.8%로 增加한 佛蘭西를 除外하고는 <표IV-3>에 提示된 國家들에 있어서 그의 構成比가 모두 下落하고 있으며 特히 日本, 이스라엘, 오스트랄리아 등에 있어서 매우 顯著하다.

3) 終身保險도 그의 構成比가 同期間中 매우 甚히 下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特히 顯著하다. 그러나 이 終身保險은 1968 年度에 있어서는 美國은 52.2%, 이스라엘 45.0%, 오스트랄리아 39.8%로서 매우 큰 比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크게 盛行하고 있는 養老保險은 美國에서는 單只 21%밖에 되지 않는다.

12.

團體保險은 獨逸과 스위스의 두 나라를 除外하고서는 거의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 定期保險에 集中되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런데 이 團體保險의 成長率은 이스라엘, 日本 그리고 멕시코가 매우 높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國家들은 처음에 낮은 水準에서 出發하였기 때문이다. 또 스위스나 獨逸도 團體保險에서 定期保險이 占하는 比重은 각各 無視할 수 없을 程度이며 佛蘭西, 日本, 美國, 스웨덴 등은 團體保險이 거의 全的으로 定期保險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團體養老保險의 경우는 1968 年度에 獨逸의 41.1%와 스위스의 41.3%를 除外하고는 모

두가 僅少한 比重에 머물려 있으며 佛蘭西는 거의 없고 스웨덴의 0.1%, 日本의 1.4%, 美國의 0.9%에 不過하다.

13.

韓國의 生命保險의 種目別構造의 特色은 個人保險에 比해서 團體保險의 構成比가 漸進的으로 下落하고 있는데 反해서 個人保險의 構成比가 漸次로 增加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까지도 우리나라의 團體保險의 比重이 壓倒的으로 크다는 點과 個人保險의 內容에 있어서도 養老保險과 生存保險이 急速的으로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여 온 反面 死亡保險은 大體的으로 踏步狀態를 걸어 왔다는 事實 등이다.

14.

世界各國의 損害保險의 種目別構造를 1950~1968 年間에 걸쳐서 比較하여 보면 지난 50 年代에는 主로 어떤 保險種目的 不良한 實績은 다른 種目이 補充해 주는 一定한 均衡狀態를 維持하여 왔는데 反해 지난 10 年間에 있어서는 이러한 保險種目間의 相互補完的成长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事實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表現하면 지난 10 年間에 自動車保險은 그의 構成比가 顯著하게 增加하여 왔는데 反해서 火炎保險과 海上保險은 急速하게 減少를 보이고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分野는 그의 構成比에 있어서 別 큰 變動이 없었다. 따라서 지난 20 年間은 營業實績이 不良한 種目的 成長率이 普偏의으로 實績이 좋았던 種目에 比해 높았었다고 볼 수 있다.

火炎保險은 1950 年度에는 無慮 全體保險料收入總額의 34.3% 即 約 3 分之 1 以上을 占한 바 있으나 1960 年에는 28.3%, 1968 年度에는 19.6%로 漸次로 그의 比重이 떨어지고 있으며 海上保險도 1950 年度에는 10.1%이던 것이 1960 年度에는 6.4%, 1968 年度에는 5.4%로 그의 比重이 역시 下落하고 있고 이에 反해서 自動車保險은 1950 年度에는 26.0%에 不過하였으나 1960 年度에 36.0%, 1968 年度에는 無慮 44.7% 即 約 半가까이로 增加하고 있다. 이에 對해서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은 1950 年度에는 29.6%, 1960 年度에는 29.3% 그리고 1968 年度에는 30.3%로 지난 18 年間을 通하여 別 큰 變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15.

먼저 火炎保險은 1950~1968 年사이에 유럽, 北美, 其他國家를 莫論하고 全體 損害保險事業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減少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27.8%에서 15%로, 北美에서는

22.5%에서 17.5%로, 其他國家에서는 52.3%에서 26.8%로 下落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海上保險에서도 發生했는데 유럽에서는 1950 年度에 14.5%에서 1968 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5.4%로 下落하였으며 北美에서도 2.2%에서 1.2%로, 其他國家에서도 13.7%에서 10.6%로 각각 下落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의 경우에는 그 發展度가 各各 相異하기 때문에 유럽 및 其他國家에서는 全業에서 위의 種目이 차지하는 比率이 낮고 北美에서는 이것과 反對의 實績을 나타내고 있다. 即 1950 年度에는 構成比가 38.3%이던 것이 1968 年度에는 45.7%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傷害 및 賠償責任保險은 北美大陸에서는 損害保險種目中 가장 規模가 큰 營業種目이 된다.

自動車保險은 損害保險의 全業種目中 그의 成長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따라서 유럽에서는 全損害保險事業中 自動車保險의 構成比가 同期間에 25.5%에서 50%로 成長하였고 다른 大陸에서는 15.1%에서 47.9%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北美洲에서의 이 自動車保險의 比重은 37%에서 35.6%로 若干 減少하고 있다. 그의 主要原因은 自動車市場의 饱和狀態 即 거의 모든 車가 自動車保險에 이미 加入되어 있기 때문이다.

16.

韓國도 保險의 種目別構造의 變化에 있어서는 世界各國의 一般的 傾向과 別 差異 없는 것 같다.

먼저 火炎保險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火炎保險은 1960 年度에는 그의 構成比가 無慮 全體 損害保險料收入總額의 85.4%를 占하였으나 1964 年에는 그의 構成比가 41.2%로 下落하고 68 年에는 20.3%로 急速한 速度로 떨어져 왔다.

한편 海上保險은 1960 年의 14.6%에서 64 年에는 38.1%로 그의 構成比가 增加하였다가 68 年에는 30.8%까지 下落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海上保險의 68 年度의 30.8%의 構成比는 美國의 3.6%, 獨逸의 5.2%, 佛蘭西의 3.6%, 日本의 13.2%보다 아직 큰 規模에 머물러 있다.

이에 反해서 우리나라 特種保險은 그동안 매우 急速한 速度로 그의 比重이 增加되어 왔다. 即 이 特種保險은 1960 年에는 그의 實績이 하나도 없었으나 62 年에는 0.3%, 64 年에는 2.8%, 그후 急速하게 構成比가 增加하여 1968 年에는 무려 그의 構成比가 31.9%까지 增加되었다.

끝으로 우리나라 自動車保險은 1960 年에는 하나의 實績도 없었으나 62 年에는 그의 構

成比가 3.1%, 그후 急速的인 成長을 이룩하여 1964 年에 17.9%, 66 年에 21.7%, 67 年에 21.1% 그리고 68 年에 17.0%로 어느 程度 安定된 趨勢를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도 어느 程度 飽和狀態에 들어간 느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保險種目別構造는 外國과는 달리 어느 程度 均衡을 維持하면서 發展해 가는 安定된 段階에 들어 서지 않았나 생각된다.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教授〕